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

농업법인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접근

김 정 호 부연구위원

박 문 호 책임연구원

연구담당자	담당분야
김정호	제1장, 제2장 제2절, 제3장, 제4장 제1절, 제5장 집필
박문호	제2장 제1절, 제4장 제2절, 부록 집필

머 리 말

최근 개별농가 단위의 경영규모 확대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농업생산의 조직화 내지 협업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협업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농업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농업 법인경영으로, 그 성패가 향후의 농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도 발족 후 4년이 경과한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전국적으로 600개소에 가깝게 설립되어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영농조합법인이 본래 취지의 법인경영으로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못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의 협업화·법인화를 통한 경영상의 유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농산물 유통 등 생산 이외의 분야를 지향하는 경향이나 혹은 각종 정책사업의 수혜를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농업 법인경영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시급히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농업 법인경영의 제도적·정책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 아래 농업법인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계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에 감사드립니다.

199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빈

면

목 차

제1장 서 론

- | | |
|---------------------|---|
| 1. 연구의 필요성 | 1 |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
| 3. 보고서의 구성 | 7 |

제2장 농업 법인경영의 전개 구조

- | | |
|--------------------------|----|
| 1. 농업법인관련 법률과 제도 | 9 |
| 2. 농업 법인경영의 동향과 전망 | 21 |

제3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운영 실태

- | | |
|------------------------------|----|
| 1. 영농조합법인의 제도적 체계 | 34 |
| 2.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동향과 성격 | 38 |
| 3.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경영관리 실태 | 48 |

제4장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성과 사례분석

- | | |
|-----------------------------|----|
| 1. 분석대상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개요 | 58 |
| 2. 사업형태별 법인경영의 성과 분석 | 61 |

제5장 요약 및 결론

- | | |
|---------------------|----|
| 1. 요약 | 80 |
| 2. 결론 및 정책 건의 | 84 |

부 록

- | | |
|------------------------------|-----|
| 1.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제도 | 87 |
| 2. 농업 법인경영의 실태에 관한 조사표 | 106 |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성격 비교	13
표 2-2 농업총조사에 의한 준농가 수의 추이	24
표 2-3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향	25
표 2-4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설립된 주요 회사법인의 개요 ...	27
표 2-5 생산조직과 협업경영의 관계	30
표 2-6 개인경영과 협업경영의 경영 특성 비교	32

제 3 장

표 3- 1 영농조합법인의 품목별·업종별 설립 동향	39
표 3- 2 영농조합법인의 작목별·업종별 분포	41
표 3- 3 영농조합법인의 업종별·조합원수별 분포	41
표 3- 4 영농조합법인의 업종별 평균 조합원수 및 출자액	42
표 3- 5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기와 성과에 대한 의견	49
표 3- 6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에 대한 의견	50
표 3- 7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권한과 운영방침 결정에 대한 의견	52
표 3- 8 영농조합법인의 운영방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53
표 3- 9 영농조합법인의 회계 관리와 성과 배분에 대한 의견	54
표 3-10 영농조합법인의 문제점과 당면과제에 대한 의견	56

제 4 장

표 4-1 1990~92년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개요	59
표 4-2 청천홍농사의 1993년도 수지결산 내역	64

표 4-3 증평영농조합의 1992년도 수지결산 내역	68
표 4-4 남농영농조합의 1993년도 손익계산서	72
표 4-5 왕궁영농조합의 1993년도 수익사업 실적	76
표 4-6 상록영농조합의 1993년도 손익계산서	79

부 록

부표 1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설립 동향	102
부표 2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업종별·형태별 분포	102
부표 3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구성원 분포	103
부표 4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사원수 분포	103
부표 5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고용자수 및 자본금	104

그 립 목 차

제 2 장

그림 2-1	법인의 종류	11
그림 2-2	현행 농업법인의 제형태	19

제 3 장

그림 3-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절차	36
그림 3-2	농업생산조직의 동태적 변화 형태	46
그림 3-3	영농조합법인의 유형화	47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농업의 영세성 탈피는 농정의 당면한 과제이자 항구적인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농정 목표를 향하여 그동안 가족농을 근간으로 한 경영규모의 확대에 많은 정책적 노력이 추구되어 왔으나, 농업경영 구조는 그다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에 농가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경지 규모는 고작 1,000평밖에 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별농가 단위의 경영규모 확대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최근에 들어 농업생산의 조직화 내지 협업화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농정사의 맥락에서 보면 1960년대에 제기된 협업농의 재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날의 농업법인은 단지 협업의 논리만에 의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협업농장식 발상이 아닌 농기업적 사고방식이 법인 설립의 동기가 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더욱이 이농의 빠른 증가 속도와 함께 농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농가를 상속하는 영농후계가는 급격히 고갈되고, 이러한 가족경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주체가 미약한 현단계에서, 부분

적이거나 태동하고 있는 농업생산조직은 한국 농업의 장래에 대한 청신호로까지 비취질 만한 것이다. 나아가서 이들이 개별농가의 농업경영을 보완하면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춘 지역농업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이러한 공동·협업경영의 법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4.7, 법률 제4228호)을 제정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제도화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은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하듯이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인”으로써, 개별농가의 협업을 통한 대규모 경영의 유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의 저장·가공·판매 등을 연계시킨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경영 주체로 부각되었다. 우리 농업사에서 처음으로 농업법인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제도 발족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제기시켰다. 그 주된 논점은 첫째, 우리 농업에서 과연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협업경영체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며, 둘째는 본래 목적의 농업생산을 위한 법인(‘農業生産法人’으로 통칭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법인경영을 인정은 하지만 장려는 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의로 발전되어,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위상이 모호하게 되고 또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¹¹⁾

¹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는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이라는 제하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법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조합법인의 육성·지도’를 위해 조합법인이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농협 및 축협의 지도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결과 일례로,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은 실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조합원 개인의 수혜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발족 4년째에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약600여개소에 2만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출발 당시부터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제도 발족 초기부터 협업 경영을 희망하는 일부의 생산조직이 영농조합법인보다는 회사법인의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농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통조직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되는 경향, 더욱이 협업화·법인화를 통한 경영상의 유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각종 정책사업의 수혜를 위한 수단으로 법인화를 꾀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영농조합법인을 필두로 하여 농업 법인경영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시급히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태동 단계에 있는 농업 법인경영에 관한 제도적·정책적인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농업법인 제도의 효시로서 설립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과제의 인식과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농업의 법인경영에 대한 제도적인 배경과 정책적인 위상은 어떠하며, 기존의 가족농과는 어떻게 다른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의 만성적인 영세소농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동안 농업생산조직 내지는 협업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최근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효시이며, 동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으로 법인경영이 제도권에 수용된 셈이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주체로 인정된 조직체로서 개인(자연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며, 농업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세대 단위를 '농가'로 규정하고 농업의 경영 주체로 인정하여 왔다. 농지제도는 이러한 가족농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장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公法人 및 학교나 종교단체와 같은 公益法人(私法人)을 농가에 준하는 '준농가'로 대우해 온 것이다. 특히 사법인의 농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재 유일하게 농업법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가지는 제도적·정책적 지위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러한 법인경영이 가지는 기업 형태론적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경영(협업경영)과 전통적인 개인경영(가족경영)을 대비하면서 경영상의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농업 법인경영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농업경영의 조직화 내지는 협업화가 농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하는 점이다.

농업의 조직화·협업화는 농업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개별농가의 생산 요소를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방안이 된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개별농가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 및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토지와 노동 및 자본의 각 요소간에 개별농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농가의 조직화가 요구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가의 조직화는 단지 영세농가를 온존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고 농업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노동력이 유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의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농가라고 하더라도 농작업 수탁조직과 같은 생산조직을 이용

함으로써 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농촌에 잔류함으로써 결국은 農地 流動化를 저해하게 된다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협업경영을 포함한 농업생산조직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된다. 이미 생산조직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협업조직이 활성화됨으로써, 결국은 비효율적인 兼業農家를 다량 창출하게 하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어떻든 우리 농업의 영세성에 비추어 볼 때, 개별농가의 조직화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며, 전업농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개별경영의 협업조직을 다양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이 개별경영을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농업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정책적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세번째 과제는 우리 농업에서 과연 협업농의 실현은 가능하며, 나아가서 현재 설립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진정한 의미의 협업경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이다.

농업사적으로 볼 때, 협업농의 이상은 개인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농업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소위 프로이센형으로 불리는 사회주의 식의 집단농장은 오늘날 거의 소멸되는 시점에 와 있다. 굳이 현대단계에서 협업농의 이상을 찾는다면 이스라엘의 키브츠나 모샤브 등을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 나라도 1960년대에 개척농장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협업농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영농조합법인이 스스로의 협업화 노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책 지향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게서 조차 사실상 완전협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표출되기도 한다. 협업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설립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과거의 협업농과 동일하지 않으며, 더욱이 근대적인 營利法人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적인 형태로 볼 때, 영농조합법인은 공익법인도 영리법인도 아닌 中間法人에 속하지만, 협업과 공동경영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이익이 추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경영의 지속성(going-concern)을 확보하는 것이 조직의 논리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농업 여건의 변화는 농업을 단지 1차적인 농산물의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저장·가공·판매 등과 연계되는 복합산업적인 속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농화는 개별농가보다는 그들의 조직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 농기업(agribusiness)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둘러싼 농업법인 제도와 관련 정책에 관하여 현단계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향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2.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위와 같은 과제에 접근하기 연구 방법과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농조합법인의 제도적 배경과 현재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체계를 검토한다. 즉, 법인은 개인농가와 달리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조직체로서 법적 지위 및 활동 영역이 부여되기 때문에, 특히 이들 법인 중에서 농업법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 하에서 설립된 농업 법인경영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추이를 전망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및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로서 특히 일본의 농업법인에 관한 제도와 법인경영의 실태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전체적인 설립 동향에 관한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가 조사한 「영농조합법인 설립 현황(1994.6)」 자료를 재집계한다.

이들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하여 법인의 설립 현황, 운영 실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이 조사의 대상은 1993년 4월 30일까지 설립된 165개소이고, 조사표가 회수된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분석 대상은 40개소이다.

또한 1990년부터 1992년 기간중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조사하고, 그 중에서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경영 성과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특히 기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사업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을 생산조직형·협업경영형·가공판매형·유통조직형·기타 형태 등으로 구분하고 경영상의 특징과 경영 성과를 분석한다.

3.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 내용에 따라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농업 법인경영의 전개 구조를 개관하는 제2장, 두번째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운영 실태를 검토하는 제3장, 세번째로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성과를 사례 분석하는 제4장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농업 법인경영의 전개 구조를 검토한다. 농업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지위가 부여된 것이니 만큼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가결하다. 또한 농업 법인은 설립 목적이 농업이라는

점 이외에는 일반적인 법인의 체계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법인의 개념과 형태를 정리하면서 농업 법인의 제도적 지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적 체계 속에서 농업 법인경영이 어떻게 현대계에 이르고 있는지 그 경과와 현황,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논하고, 이들 농업 법인경영의 현대적 의의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운영 실태를 검토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률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위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내용도 함께 정리한다.

이어서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공포와 함께 설립되기 시작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향과 성격을 검토하고, 특히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법인의 운영과 경영 관리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들 법인의 형태를 유형 구분한다.

제4장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성과를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다. 먼저, 분석 대상인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상황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고, 사업 형태별로 구분하여 법인 경영의 성과를 분석한다. 여기서 사업 형태의 구분은 생산조직형·협업경영형·가공 판매형·유통조직형·기타 형태 등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약간의 정책 건의 사항을 정리한다. 그리고 제2장의 외국 사례와 관련하여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제도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제 2 장

농업 법인경영의 전개 구조

1. 농업법인 관련 법률과 제도

1.1. 법인의 개념과 형태

1.1.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자연인과 구별되는 인격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함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체로 인정되는 조직체를 말한다.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인적 단체 및 일정한 목적으로 공여된 재산 중에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그동안 법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제기되었다. 법인은 단지 법률상의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의제된 것이라는 法人擬制論, 법인이 법률의 기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사회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法人否認論, 법인의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법인의 모든 법률 관계를 도출하는 法人實體論 등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법인실체론이 지배적

이다.²⁾

현행 법률 체계에서 법인의 성립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법이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주어지고 있다.

첫째,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하며(민법 제31조), 그 설립은 입법주의 원칙을 따른다. 즉, 공법인은 특별한 법률을 필요로 하는 특허주의, 사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허가주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합치하여야만 설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 또는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자유설립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민법 제35조, 39조). 그리고 상법상의 각종 회사는 상법에 규정한 바에 따르고, 기타 공익법인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다.

둘째, 법인의 활동은 그 기관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인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가지며, 대표기관을 통하여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가진다. 이들 대표기관은 법인의 대내적 업무도 집행한다(민법 제34조, 35조).

셋째, 법인은 주어진 활동을 위하여 각기 의사결정 기관을 가진다. 즉, 공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은 국회나 지방의회 등이고, 사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있으며, 사원총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의 사무를 이사회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또한 감사기관으로 공법인의 경우는 감사원, 사법인의 경우는 監事가 있다.

넷째, 법인의 해산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 사업의 성취 불능, 파산, 설립 허가의 취소 등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된다. 또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사원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산에 의하여 청산 단계에 들어가서 청산이 끝나고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77조 이하, 상법 제227조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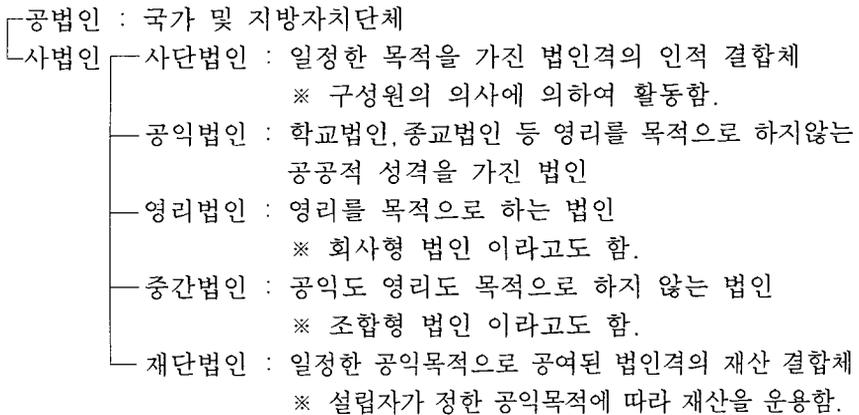
²⁾ 법인의 실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기 위해서 「동아대백과사전」을 주로 참고하였다.

1. 1. 2. 법인의 종류

일반적으로 법인은 그 구성 요소(실체)가 사람(社團)이나 또는 재산(財團)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별된다.³⁾

또한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公法人과 私法人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1 법인의 종류



공법인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사법인은 민법 및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대부분의 법인이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의 중간적인 형태로 중간법인(공기업 등)을 위치시킬 수 있다.

²⁾ 그밖에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위 '법인격이 없는 社團'도 존재하지만, 이에 관하여 민법은 물건 소유 관계(민법 제275~276조) 외에는 아무런 직접적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조직체이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으로 공여된 법인격의 재산적 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구성원의 의지로서 활동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설립자가 정한 공익 목적에 따라 재산을 운용하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법상의 비영리법인(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에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出捐 行爲가 주어진다(민법 제32조 이하).

그런데 우리가 흔히 법인체 혹은 법인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을 의미하며, 사단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비영리법인·중간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라고도 하며, 앞에서 언급한 민법상의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이 주로 해당된다.

영리법인은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상법상의 일정한 요건에 합치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지칭하여 會社型 法人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공익도 영리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이른바 중간법인으로 불리는 형태가 있다. 중간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는 협동조합이며,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조직한 법인으로서 회사형 법인에 대응하여 組合型 法人이라고도 한다.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라는 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비공익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사업을 통하여 구성원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진다.⁴⁾

이러한 조합형 법인은 대부분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되며,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규정에 우선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과 축협,

⁴⁾ 「협동조합법규」의 협동조합법규 총설을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협,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도 중간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1. 1. 3. 법인경영의 경영적 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사경제적인 영리 집단으로 대표적인 형태는 회사이며, 여기에 중간법인의 형태로서 협동조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들 법인의 법률적인 지위와 경영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표 2-1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성격 비교

구 분	조 합 법 인	회 사 법 인
목 적	공동의 이익 증진	영리 행위
자 본 금	금액 제한없음	형태별로 최저한도 설정
지 분 양 도	조합의 승인 필요	사원간의 양도는 자유 사원 이외의 양도는 총회의결
의 결 권	1인 1표 원칙	1구좌 1표
주요의사결정	조합원 총회에 의함	대표자(사장)의 권한

(1) 合名會社

합명회사는 인적인 신뢰 관계를 갖는 2인 이상의 자본 출자자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회사이다(상법 제178~267조).

합명회사의 사원, 즉, 출자자는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를 원칙으로 한다. 경영의 자본은 회사 자본으로서 일단 출자자의 재산으로부터 독립되고 있으나 사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개인경영과 비슷하다.

합명회사는 극히 밀접한 人的 結合體이기 때문에 사원간의 유대와 상호신뢰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장점으로써 사원 자신이 직접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출자액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은 출자로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회사 사원의 계속적인 책임이 전제가 되므로 채권자의 신뢰를 얻기가 용이하다.

한편 이미 설립된 합명회사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원은 그가 입사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원은 회사의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퇴 사원이라도 하더라도 탈퇴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합명회사는 중규모 사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형태이며, 특수회사와 같이 타인을 배제하는 同族會社의 설립 형태로 많이 이용된다. 또한 재능과 수완을 겸비한 경영자를 사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경영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자본을 필요로 하거나 어느 정도 모험적이고 항구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한 점이 많다.

(2) 合資會社

합자회사는 최소한 1인의 사원이 합명회사와 같이 무한책임 사원이 되고, 또한 최소한 1인의 자본출자를 하는 사원(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따라서 사원 전부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사원 전부가 당연히 경영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즉, 무한책임 사원만이 경영자가 되고 유한책임 사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법 제268~287조).

따라서 합자회사에서는 유한책임 사원의 참가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한책임 사원의 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본 조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즉, 사업 성적이 좋지 못할 때에는 당연히 은행 이자가 고율이 될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에 유한책임 사원은 소액 혹은 전혀 이익 배당과는 상관없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로서는 유리한 셈이다.

또한 유한책임 사원은 회사의 대표권이나 경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사적인 환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참여하는 사원이 입사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거나 탈퇴시에도 탈퇴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주어진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사원간의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둔 소수의 자본 출자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형 법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인적 조직체인 셈이다. 따라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상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고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有限會社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가미한 중간 형태의 회사이다(상법 제543~588조).

이러한 회사 형태는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적이고 유한한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다르다. 그러므로 유한회사는 합명회사와 닮은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유한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소유자와 경영주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이것을 소유와 경영(관리)의 형식적인 분리라고 한다. 이러한 형식적 분리는 부분적으로 이미 합자회사에서도 성립되는 것이지만 유한회사에서는 전면적으로 분리된다는 점이 다르다.

유한회사는 다수의 균등액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금을 가지며, 사원 전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지닌다. 설립 절차는 간단하여 발기인의 설립 등기로 가능하고, 모집에 의한 설립은 없다. 또한 이사의 수는 1인이라도 가능하며, 이사회나 대표이사과 같은 의사결정 기구가

없어도 되고, 감사도 임의기관이다. 다만, 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50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원간 또는 사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고, 지분의 유가증권화도 제한된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형태이다. 또한 회사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 비용이 소액(회사의 자본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인 동시에 주식회사에 비하여 조직이 간단하고 공개 의무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4) 株式會社

주식회사는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일정한 자본을 출자하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상법 제288~542조).

주식회사는 7인 이상으로 발기하여 설립하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총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는 유한책임을 지낸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특성을 지닌 자본 중심의 조직체이며, 물적 회사의 전형인 셈이다.

또한 주주는 자기 소유의 주식 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의 사업에 참여하며 회사 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해진다. 주주는 회사로부터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 형태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자본증권 제도이다. 즉, 회사 자본의 전부를 균일 소액의 주식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이를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화함으로써 회사의 실체를 이루는 자본 이외에 擬制資本을 형성시키고 자본의 유동화를 실현시키며 출자의 비인간화를 통하여 집단경영을 성립시킨다. 자본증권제도는 증권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그 기능을 발휘하며, 자본증권인 주식을 극히 간편한 투자 물건으로 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양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로서는 주식을 분할

하여 출자자 수를 많게 함으로써 아무리 거대한 자본이라도 모집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대규모 사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출자자의 책임을 유한하게 하고 투자한 자본을 출자자의 소유 자산과는 분리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극소화할 수 있다.

다만, 대다수의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는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으며 업무 집행기관인 이사들도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사원 만큼 열중하지 않는 등의 결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결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현대가 주식회사의 시대라고 할 만큼 회사 설립의 주된 형태로 채택되고 있다.

(5) 協同組合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또는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체이다(협동조합법규 총설). 따라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진다.

첫째로, 법인의 설립 목적은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社團이어야 한다.

둘째로, 조합은 임의로 설립하고 조합원 또한 임의로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조합의 설립과 해산, 그리고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각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 방식은 1인 1표제에 의하여야 한다.

넷째로,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자본 결합체가 아니고 인적 결합체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실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회사법인과는 다른 운영상의 특질이다.

협동조합의 형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사업협동조합, 신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기업조합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기능별로는 1차적으로 생산조합과 소비조합으로 구분되며, 생산조합은 다시 가공·판매조합, 구매조합, 이용조합, 신용조합, 생산적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아가서 생산조합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업 중 하나의 기능만을 하는 단일 조합이 있는 반면에, 생산 뿐만 아니라 구매·판매·가공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진 형태도 존재한다.

1.2. 농업법인의 제도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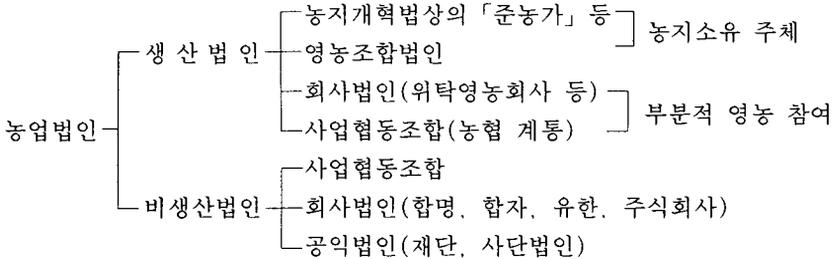
농업법인은 글자 그대로 농업을 행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사업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총칭한다. 여기서 농업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농업법인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영농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라는 광의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⁵⁾

따라서 농업법인으로 총칭되는 법인의 형태는 <그림 2-2>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생산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생산법인으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생산법인인 ‘農業生産法人’이 일반적으로 농업법인으로 불리워지며, 협의의 농업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⁶⁾

⁵⁾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에서 농업의 범위에는 경종업·축산업·원예업·양잠업·특수작물의 생산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⁶⁾ 일본의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법인의 의미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농업생산법인’과 양계나 양돈과 같이 농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농업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2-2 현행 농업법인의 제형태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현재 법률에서 영농 활동 또는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형태는 농지의 소유 주체로서의 '準農家'이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바, 동법 제6조는 농지의 매수 대상을 농가 이외의 농지 소유 주체로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종교단체·후생기관·연구기관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개인농가'와 구별하기 위하여 농지보전법(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준농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준농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리 목적의 농지 소유자가 아니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공법인 내지는 이에 준하는 기관, 그리고 사법인으로서의 공익법인(비영리법인)에 포괄된다고 볼 수 있다.⁷⁾

그밖에 일시적인 보유의 형태이지만, 농지담보법 제4조에 의하여 농지저당기관(농·수·축협,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와 제38조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

⁷⁾ 경작 목적의 소유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농지개혁법 제6조), 농업연구기관·학교·기타 공동단체가 시험지·실습지·종묘포지로 사용하기 위한 소유(농지개혁법 제19조),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3ha 이내의 농지(농약관리법 제23조) 등이 있다.

사가 농지매매사업 또는 농지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이다.

두번째 형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은 현행 법률에서 영리 목적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사업체이며, 명실상부한 농업생산 법인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세번째 형태는 위의 두 가지 형태를 벗어나는 생산법인이다. 여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축산법 제27조에 의한 기업축산,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는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으나, 농업경영이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법인으로 성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독립적인 농업경영 주체는 아니며, 농업경영 주체의 생산 활동을 보완해 주는 농업서비스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축산법 제27조는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업(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업 및 그 계열기업)을 제외한 기업적인 축산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유가공업체의 직영목장, 양계나 양돈의 계열화업체는 축산경영의 중요한 법인 형태인 셈이다.

끝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협동조합이 부분적으로 영농에 참여하는 경우, 식품유통업체인 회사법인이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위탁영농회사와는 달리 상법에 의한 영농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농업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다.

2. 농업 법인경영의 동향과 전망

2.1. 농업 법인경영의 연혁

우리 나라에서 농업의 협업(공동)경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62년 12월에 당시 농림부가 주도한 농업구조개선심의회에서 자립경영 육성의 일환으로 협업농을 제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⁸⁾

이에 따라 정부(당시 농림부)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시범적으로 전국의 5개 지구에 協業農場을 구상하게 되었고, 1963년 3월에 5개 지역에서 협업농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국내 식민과 산지 개발(개간)로서, 사업지구는 경기도 광주군의 광주협업개척농장, 전북 진안군의 운장산협업개척농장, 전남 광양군의 백운산협업개척농장, 경북 월성군의 박달군협업개척농장, 경남 양산군의 대리협업개척농장 등이었다.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을 계기로 민간 주도의 협업농장이 농민운동적 차원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위의 개척농장을 비롯하여 모두 협업농의 이상을 추구했을 뿐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증평협업농장(1969년 3월 25일 「증평협업 이상촌」으로 시작, 1991년 7월 23일 영농조합법인 등기) 한 곳 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1960년대에 태동한 협업경영에 대하여 그 성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하고 싶

⁸⁾ 1962년 6월 29일 각의는 농림부 내에 「농업구조개선심의회」를 설치키로 의결하고 동년 7월 4일 「농업구조정책심의회규정」(각령 제861호)를 공포하였다. 이 위원회는 동년 12월에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인 '농업구조개선책'을 발표하였다.

은 것은 당시의 협업경영이 개별농가의 조직화 요구라는 자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외부적 발의 내지는 운동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것이다.

당시 농림부의 「협업개척농장사업 종합보고서」(1965년)에서도 지적하듯이, 각 농장별 입주자들이 농장에 입주하기 전에는 각기 다른 환경 조건하에서 개별적으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이를 일시에 바꾸어 공동생활이 중심이 되는 협업경영을 하기에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의 경험은 1967년 공포된 「農業基本法」에 반영되어 정책적으로 협업농도 육성한다는 명목상의 규정을 표방하는 선에서 종결되었으며, 따라서 그 후 협업농에 관한 논의는 농지법 논쟁을 제외하고는 거의 단절된 셈이다.⁹⁾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업을 위한 농가의 조직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발표된 유인호의 연구는¹⁰⁾, 농가의 조직 형태로서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농작업의 협업화,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작업 및 기계이용의 협업화, 그리고 모든 생산요소를 공동으로 하는 완전협업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농업생산 공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作目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농협은 1970년부터 자체조직으로 작목반 시범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하여(397개 조합에 1,484개 작목반) 현재까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작목반을 모태로 하여 오늘날의 협업경영으로 발전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시작된 농협의 작목반은 1977년에 농촌진흥청의 농사개량구락부와 통합하여 새마을영농회의 내부 조직으로 바뀌는 단계를 거치게 되며, 한편 1983년에 행정기관 주도로 결성된 협동출하반과의 중복적인 성격 때문에 1991년부터 기존의 작목반(90년말에 16,758개소)과

⁹⁾ 다만, 1967년의 3차 농지법안부터 농업의 공동경영을 위한 법인(농산법인)을 규정하였으나, 법률 제정을 보지 못하고 입법 시도에 그쳤다.

¹⁰⁾ 유인호, 「한국농업협업화의 연구」, 한국연구원, 1972.

협동출하반(90년말에 12,425개소)을 통합한 새로운 작목반으로 바뀌어 현재 약1만5천여개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¹¹⁾

또한 1981년부터 농기계 보급을 위하여 지원된 기계화영농단(당시는 새마을 기계화영농단) 사업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토대로 한 농가간의 협업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계화영농단은 농가 5호를 단위로 하는 소규모와 10호를 단위로 하는 대규모로 구분되어 1981년의 612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만여개소가 조성되었다.

물론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도 진정한 의미의 농업생산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 특히 농기계의 공동소유·공동이용은 명목상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용 농가간의 협력 관계는 극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영세소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력의 조직화 내지는 기계작업에 적합한 노동조직을 확립하기 위한 개별경영간의 집단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나 농작업 수탁조직의 형성은 협업경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존재야말로 농업생산법인 제도를 태동하게 한 커다란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9년 5월, 정부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농조합법인(소농의 협업체) 및 위탁영농회사(기계화 영농대행업체)의 육성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1990년 4월에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제정하고, 연이어 동년 8월에 시행령, 11월에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농업 법인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전국 제1호 영농조합법인으로 경남 김해군 진례면에 「청천홍농사」(1990. 11. 26 설립 등기)가 설립되었고, 위탁영농회사로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옥천농업진흥주식회

¹¹⁾ 동일지역에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20~30호 농가들이 회원조합에 신청하면 농협이 읍·면과 협의 검토 후 작목반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1990. 11. 2 설립 등기)가 제1호로 설립되었으며, 그 후 설립되는 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2. 농업 법인경영의 동향과 향후 전망

현행 통계에서 농업법인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농업총조사에서는 개인농가 이외의 농업사업체를 '준농가'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정부기관·학교·종교단체·기업체·기타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준농가의 동향을 정리한 것이 <표 2-2>이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 센서스에서는 준농가의 수가 2,746개소로 조사되었으나, 1970년 센서스에서는 4,052개소로, 1980년 센서스에서는 2,482개소로, 그리고 1990년 센서스에서는 1,468개소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준농가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준농가의 종류에 따라서는 년도간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복이 심한 것은 학교로서 1970년에는 2,184개소였던 것이 1990년에는 불과 521개소로 줄었다. 이것은 농업 법인경영에 대한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 농업총조사에 의한 준농가 수의 추이

단위 : 개소

구 분	1960	1970	1980	1990
학 교	1,880	2,184	NA	521
정부기관	153	320	NA	282
종교단체	378	645	NA	274
기 업 체	-	-	NA	231
기 타	335	903	NA	160
합 계	2,746	4,052	2,482	1,468

주 : 1960년의 협동조합은 기타에 포함하고, 1980년도는 세부내역이 미비함.
자료 : 농업센서스, 각연도.

표 2-3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향(1994. 7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누 계
위탁영농회사	5	25	144	291	315	780
영농조합법인	2	28	60	201	288	579

주 : 설립년도는 등기일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이 표에서 흥미로운 것은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로 분류되지 않는 준농가, 즉, 기업체 혹은 기타 단체의 동향이다. 이들 준농가 역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업체에 관해서는 1990년도부터 별도의 분류를 하고 있듯이 개인농가에 대체되는 법인경영체가 다수 성립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또한 농업법인 제도의 태동과 함께 상업농화의 진전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과 연계된 회사 형태의 법인이 다양하게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1994년 6월 현재 579개 조합에 17,071명의 농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탁영농회사는 정부의 농기계 보급사업을 배경으로 780개 회사에 4,693명의 농민이 사원으로 참여하여 앞으로도 설립되는 영농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이미 현실적으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가 다양하게 출현되고 있으며, 이들 경영체는 기존 농가의 결합형태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농업경영의 형태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 몇 가지 실태와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기관(公法人)에 의한 농업경영이다. 공기관이란 이미 준농가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각종 농업관련 기관을 말한다. 특히 낙

도나 산간지역에서는 휴경농지가 증가하면서 이를 공기관이 대리경작하는 경우가 발견되며, 도시근교에서는 市民農園과 같은 형태도 발전하고 있다. 이들 농업경영체는 가족농의 쇠퇴를 보완하는 과도기적인 역할에 그칠 수도 있으나, 당분간은 농가의 감소에 따른 새로운 농지 이용·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농가가 출자한 법인경영이다. 이 형태는 현재 영농조합법인에 한정되고 있으나, 조합 형태 이외의 법인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회사 형태를 가지는 농산법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회사는 아직까지는 농민이 출자하고 그들이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활동하는 인적 결합체이지만, 장래에는 구성원과 자본을 확대하면서 자본 결합체로 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는 농외 자본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을 제한하고 있으나, 점차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농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농외 자본은 기술 개발의 분야에서 이미 농업을 앞서가고 있으며, 그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농업경영체를 창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넷째는 농외자본이 會員契約(franchise)의 형식을 빌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족경영을 산하에 흡수하는 형태로 농업경영의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 단위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영관리 능력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을 갖는다. 이미 축산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그러한 경영이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농업 경영은 개인농가와 농업 법인경영체로 구분되어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족농은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으며, 뛰어난 능력과 의욕을 가진 농가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속하지 못하는 농가는 이농하든지 사회적인 농업생산 주체로서의 의미를 잃는 것으로 변해가든지 혹은 계

표 2-4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설립된 주요 회사법인의 개요

명 칭	설립일	참여농가수	사 업 내 용	비 고
(주)고양장미 영농회사	94. 7	출자: 농가 85호 + 선유실업	공동판매, 수출	고양군 장미농가와 무역회사 공동출자 설립
(주)칠산농산	84. 5	출자:60호	벼 집단재배	「가솔농산」과 함께 경남도 지원 설립
(주)농민회 농산물유통 사업단	92. 4	출자:25호	공동판매 (직판장 운영)	화성군농민회조직과 연계
(합)안동 황우촌	91. 8	출자:25호	공동구입, 공동판매 (직판장 운영)	안동군 한우 농가
(주)한 국 참다래유통 사 업 단	91. 6	출자:171호 재배농가: 415호	공동선과, 저장, 가공 수출입, 기술교육 등	참다래생산자조직 수출입업체 지정
(주)도두람	91. 1	출자:70호 계열농가: 약200호	양돈계열화사업, 가공, 판매, 기술교육 (직판장 운영)	이천군 양돈농가 계열화업체 지정
(주)하 림	90.10	출자:20호 계열농가: 350호	양계계열화사업, 가공, 판매, 기술교육	하림식품과 통합 계열화업체 지정
(주)봉 화 양계협업단지 경 영 회 사	90. 5	출자:21호	양계협업단지 (초생추 공급)	양계협업단지 지정
(주)가보농산	89.11	출자:6호 사육농가: 20호	꿀가공 (호박꿀, 쑥꿀)	양봉농가 조직
(주)선농식품	87.12	출자:15호 재배농가: 80호	김치가공(15종)	화성군 채소작목반
(합)만 나 원	82. 3	가족법인	수경재배 협업단지 공동판매(상표권) 관광농원	계약재배농가 참여

열화를 통하여 자본가적인 농업경영에 편입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구조 조정이 농업에서도 다양한 경영체를 필요로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2.3. 농업 법인경영의 현대적 의의

2.3.1. 농업생산조직·협업경영에 대한 제견해

일반적으로 農業生産組織이란 2호 이상의 농가가 농업생산의 과정에서 공동으로 조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면, 공동작업·집단지배·공동이용·작업수탁·협업경영 등의 형태가 있다(표 2-5). 이 조직을 법인화한 것이 법인경영인 셈이며, 따라서 농업 법인경영의 의의는 조직화·협업화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자에 따라서는 생산조직과 협업경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 시각을 달리한다. 그 출발점은 농업생산조직에 참여하는 농가가 조직체와 어떠한 동기로 어떻게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며,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¹²⁾

먼저 그 하나는 생산의 조직화를 주로 새로운 생산력의 도입·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더 높은 경영자 기능의 도입·형성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또한 전자는 농업생산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가족경영이고 생산조직은 이를 보완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는 입장이며, 후자는 생산조직을 독립적인 경영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¹²⁾ 이러한 논의는 1980년대에 일본 농업경영학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제견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은 吉田忠, “農業經營と生産組織,” 「現代日本の農業經營」, 富民協會, 1988.을 참조할 수 있다.

전자의 견해는 생산력 구조론적 조직론으로 지칭되며, 주로 수도작 경영을 중심으로 한 개별농가의 조직적인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즉, 영세소농 체제의 자작농적 토지소유가 해체되면서 조직화를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생산기술을 집단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 조직화의 동기를 찾고 있다.

이 견해의 특징은 생산기술을 사회적인 발전 단계에 의한 생산력 구조로 파악한다는 점, 그 생산력의 담당 주체인 생산조직을 農民層 分解에 의하여 파생된 농가계층의 결합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 생산조직에 매개된 농가계층간의 생산력 경쟁을 농가계층 분해의 기본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점, 그리고 조직화를 통한 생산기술의 도입이 개별경영의 수익성에 즉시 반영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편 후자는 조직화의 동기를 경영자 기능의 보완이라는 점에서 찾으려는 견해이다. 즉, 개별농가의 자기완결성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생산력의 한계보다는 경영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며, 특히 상업농화의 진전에 따라서 수익성 향상을 위한 경영 기술이나 생산·판매면의 대응이 조직에 의하여 보완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나아가서 개별농가의 경영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립되는 생산조직이 궁극적으로는 개별농가의 연계 내지 통합을 통하여 협업경영과 같은 실질적인 농업경영의 주체로 발전하게 됨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후자의 견해는 생산조직의 생산 주체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조직화의 사회적 배경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또한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생산조직의 본질적인 특질이 거의 검토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생산조직의 성립에 전제가 되는 생산요소의 재결합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근대적인 조직이론을 농업생산조직에 적용함으로써 조직의 관리론적인 측면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표 2-5 생산조직과 협업경영의 관계

지 표 분 류	경 영 관 리 능 기	노 동 투 입	노동수단 소유		생 산 물 귀 속	농 지의 권 리 이 동
			기 계	토 지		
공동이용조직	×	△	○	×	×	×
집단재배조직	○	△	△	△	×	×
작업수탁조직	○	○	○	×	×	△
협업경영	○	○	○	○	○	○

주 : ○는 전부 공동화, △는 약간의 공동화, ×는 공동화와 무관

〈표 2-5〉는 생산조직과 협업경영의 관계를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비교한 것으로, 공동이용조직·집단재배조직·작업수탁조직 등의 생산조직이 협업경영과 다른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협업경영이란 개별농가가 통합한 完全協業을 의미하며, 이밖에도 현실적으로는 생산조직과 협업경영의 중간적인 성격인 소위 部分協業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생산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견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산조직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더욱이 이러한 조직체가 개별농가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경영 단위로 성립되면서 개념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생산조직에 대한 편협한 인식, 즉, 농업생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별농가(경영)이고 생산조직은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혹자는 생산조직이라는 용어보다는 ‘生産者組織’¹³⁾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칭하는 용어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생산조직이나 협업경영은 독자적으로 생산을 행할 수 없게 된 농가가 그 생산 과정

¹³⁾ 최근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에서도 지역 단위의 농산물 판매조직을 ‘품목별 생산자조직’으로 칭하고 있다.

을 보완함으로써 경영의 유지·발전(going concern)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합된 개별경영 주체간의 대응 형태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 조직체를 구성하는 개별농가가 조직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조직화·협업화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2.3.2. 농업 법인경영의 현대적 의의

농업 법인경영은 농업경영의 조직화 내지 협업화를 통한 유리성과 그 경영단위의 법인화를 통한 유리성을 향유하며, 이러한 유리성에서 농업 법인경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협업화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업경영의 전문화 혹은 복합화(다각화)를 통한 경제적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즉, 개별농가의 소규모 생산을 통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물의 고품질화·균질화·규격화를 통한 판매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나아가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불가능한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업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

두번째는, 협업경영이 장차 農企業(agri-business)으로 발전 가능한 새로운 농업경영의 형태라는 점이다. 전통적인 농업은 일차적인 농산물의 생산에 한정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최근에 들어 농가 단위에서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협업경영은 개별농가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사업 능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개별농가의 생산을 바탕으로 가공·판매 또는 관광농업 등을 연계한 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부대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농외소득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는, 협업경영이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지속

성 있는 농업경영체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농은 가족내의 후계자 단절로 당대의 농업경영이 소멸되지만, 협업경영체는 조합원이나 사원 등의 신규 참여가 가능하므로 농업경영의 영속성이 확보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경영주 1인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이 협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평생 직장과 노후를 보장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협업경영은 이른바 가족경영의 장점과 집단조직의 장점을 모두 가진다는 점이 이념이지만, 실제로는 경영의 기본 원리인 平等主義 原則이 경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效率性 原則과 일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협업경영의 유리성은 구성원 간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공동체적 인식을 돈독히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표 2-6 개인경영과 협업경영의 경영 특성 비교

구 분	개 인 경 영	협 업 경 영	
	가 족 농	임 의 협업	법 인 경 영
경영체 성격	단독 자연인	복수 자연인	복수출자자의 법인
사업 계속성	사망으로 종결	합의된 기간 또는 구성원의 해체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책임 형태	무한책임	무한책임	무한 또는 유한책임
자금 조달	개인의 투자	구성원의 투자	구성원 출자, 차입금 등
토지 조달	상속, 구입, 차입	구성원의 제공	출자, 구입, 차입
의사 결정	경영주 단독	구성원의 합의	구성원, 사원의 합의
소유자 사망	상속 또는 파산	생존하는 구성원에 매각	지분은 유산 또는 상속으로 남게 됨

다음으로 이러한 협업경영의 법인화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정책적인 측면으로서 농업경영의 의식 개혁을 들 수 있다. 즉, 가족농의 연장선에서 법인화를 통한 경영자 의식을 제고할 수 있

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직장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농가와는 다른 의미의 경영체를 확립할 수 있다. 특히 후계 인력이 상속농가가 아닌 법인 경영체에 취업하게 되므로 농업에 대한 직업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둘째는 법인경영체가 가지는 개별경영으로서의 유리성이다. 법인경영체는 후계자의 제약이 큰 농가에 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으며, 유연한 경영 승계와 다양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대외적인 신용력이 제고되어 금융면이나 시장 교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보조사업 대상·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의 대상이 된다.

끝으로 법인 경영이 회사의 형태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人的 集團의 성격과 資本 集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 원칙을 용이하게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구성원이 농가에 한정되지 않고 비농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욱이 경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경영자 능력이나 노동력 및 기타 생산 요소의 추가적인 조달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경영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유리성이 있다.

제 3 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운영 실태

1. 영농조합법인의 제도적 체계

1.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운영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률 제4229호, 1990.4.7)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경영체이다.

동법 제6조는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自由設立主義에 입각한 농업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¹⁾이라고 누구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¹⁾ 여기서 농민이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한 ‘농어민’ 규정에 해당하는 자(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봐야 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동법 제6조 제2항), 농지 소유의 왜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조합형 법인으로서 조합원인 농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즉, 농수산업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등(시행령 제12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농 경험이 없는 농가의 참여로 인한 부실 경영도 우려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이 정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4항).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법인의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농민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를 거친 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영농조합 법인은 성립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인가나 허가를 거치지 않는 자율설립주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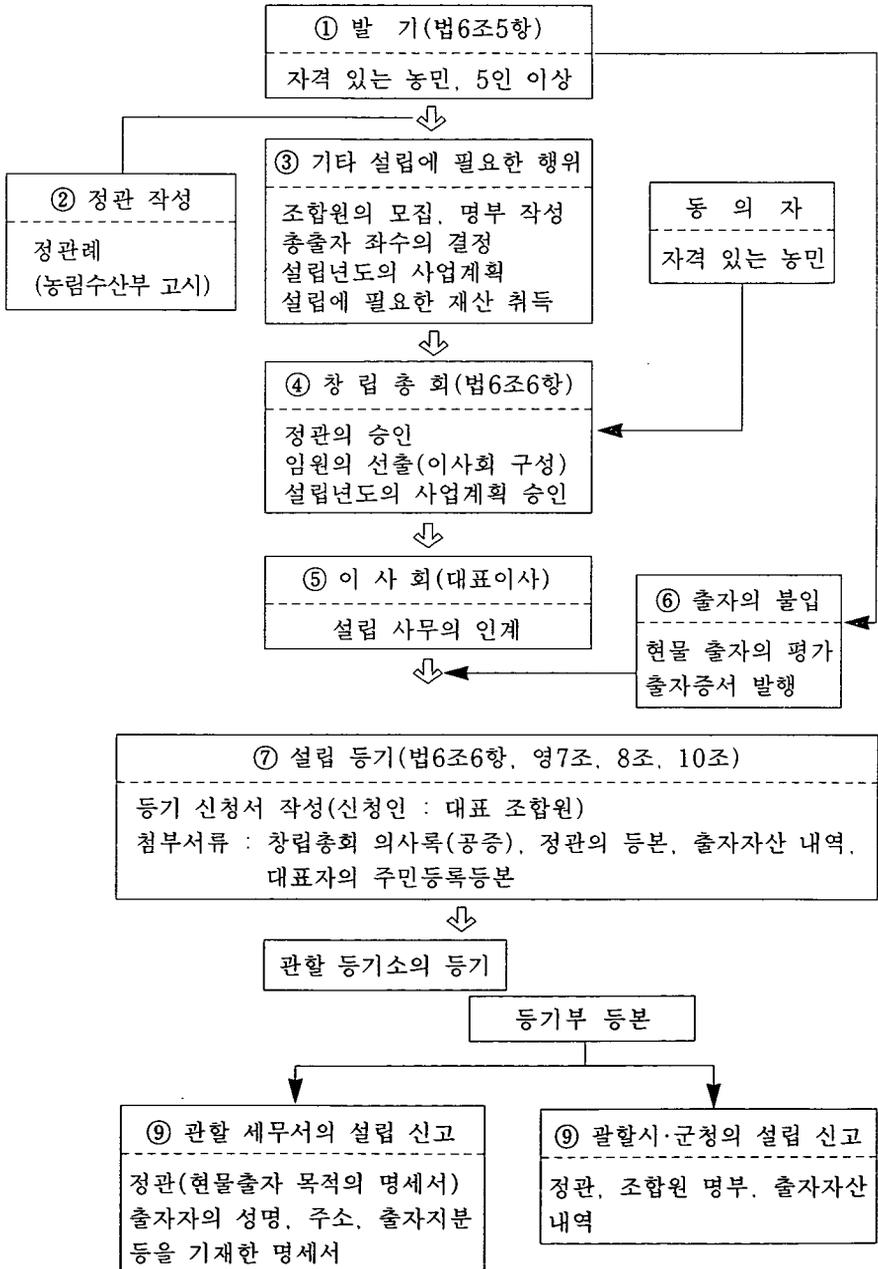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절차는 <그림 3-1>에서 요약 정리한 바와 같다.

조합의 설립을 위한 첫단계는 먼저 자격이 있는 5인 이상의 농민이 발기하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5인 이상이란 1가구 1인을 원칙으로 하므로, 5호 농가를 의미한다.

이들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시행령 제13조), 일반적으로 정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부가 「定款例」를 고시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명칭, 목적, 사업, 조합원의 자격 등은 정관의 의무적인 기재 사항이다.

정관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한 내규와 같은 것이므로, 그 취지에 동참하는 발기인 이외의 조합원을 모집하는데도 참고할 수 있으며, 찬동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총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관에 의거 설립후의 사업이 결정되므로 초기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설립에 필요한 재산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림 3-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절차



이렇게 하여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게 되면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의 승인, 임원 선출과 이사회 구성,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6항).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위하여 조합원은 출자금을 불입하여야 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 출자인 경우에는 가액을 평가하며,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 또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게 된다.

이 때 등기할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의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 방법, 해산사유, 대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등이며, 등기시의 첨부서류로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 내역,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한편 설립 등기를 마친 영농조합법인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시행령 제7조), 또한 세무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설립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1.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과 농업정책적인 지원이 부여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제상의 지원은 크게 법인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사항은 첫째로, 법인세·교육세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로 농지소득 전액과 기타 소득의 일정액이 해당된다. 둘째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으로 농약·비료·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는 농지세의 부담경감(지방세법 제198조)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과세를 하

지 않고 조합원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지방세법 제110조의3)로서 영농조합법인 고유의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면세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의 적용에서 법인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조합원에 대한 사항은 첫째로 소득세·교육세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로서, 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은 면세하고, 기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음으로 농정상의 지원은 대부분 일반농가에 준하되, 특히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높히는 수준으로 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지구입자금은 일반농가 수준의 2배이고, 농기계구입자금은 용자범위(55.90%)를 많이 두고 있으며, 기계화영농단으로도 선정하여 국고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영농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필요액이 지원된다.

아울러 경영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및 농협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이 농협과 축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법 제6조 제8항).

2.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동향과 성격

2.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향

영농조합법인은 1990년 가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063호, 1990.8.8)이 공포되면서 비로소 설립되기 시작하여 그 해말까지 2개소가 설립 등기를 마쳤다.

맨 먼저 설립된 곳은 경남 김해군 진례면 청천리의 「영농조합법인 청천홍농사」(1990.11.26 설립)로서, 사업구역을 진례면 일원으로 하

여 수도작 영농대행업 중심의 사업 목적을 가진 영농조합이다.²⁾ 다른 하나는 전북 김제군 공덕면 동계리의 「태농영농조합법인」인데, 현재는 파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후 1991년에 28개소, 92년에 60개소, 93년에 201개소, 그리고 94년 6월까지 288개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의 누계는 579개로 집계된다. 다만, 이 집계는 설립 등기 후에 관할 시·군에 신고한 영농조합법인인 이 해당되며, 따라서 실제보다 약간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³⁾

표 3-1 영농조합법인의 품목별·업종별 설립 동향 (1994.6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합 계
품 목 별	쌀	1	10	33	45	39	128
	채소	0	1	3	14	29	47
	과수	0	0	3	14	37	54
	화훼	0	0	2	2	15	19
	특작	0	0	2	5	33	40
	축산	0	2	4	71	55	132
업 종 별	합	1	15	13	50	80	159
	생산물	1	21	46	125	151	344
	유통	0	5	3	34	51	93
	생산+유통	1	2	8	34	73	118
	자재공급	0	0	3	8	11	22
	관광농원	0	0	0	0	2	2
합 계	2	28	60	201	288	579	

주 : 설립일자는 등기일 기준임.

업종 구분의 생산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유통은 농자재 구매 및 농산물의 수집·가공·판매·자재공급은 생산 제재료의 공동구입 등을 포괄함.

자료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의 내부자료인 「영농조합법인 현황」을 재집계하여 제표한 것임.

²⁾ 영농조합법인 「청천홍농사」의 정관에는 사업을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 도모'로 명기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은 수도작 수탁작업으로 시작하였다.

³⁾ 연도별 설립 동향은 농림수산부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현황」 자료를 재집계한 것이며, 이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상기 현황 자료에 파악되지 않은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93년 6월 현재로 파악된 영농조합법인의 수는 579개소이며, 조합원인 참여농가 수는 17,071호에 달하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지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별 분포를 보면, 광주시(1개소, 이하 단위 생략), 경기(45), 강원(67), 충북(25), 충남(32), 전북(60), 전남(208), 경북(64), 경남(73), 제주(4) 등으로 전남이 가장 많다. 전남의 군별 분포를 보면, 해남군이 133개소로서, 이는 해남군의 고천암 간척지를 분배받기 위해 97개소가 설립된 것에 기인한다.

즉, 고천암 간척지는 해남농지개발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어 간척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성된 간척농지의 분배 방식으로 농지의 분할 방지와 집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마을 단위의 영농조합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제4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협업경영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영농조합법인인 셈이다.

다음으로 총579개의 영농조합법인을 작목별로 보면, 쌀(128개소, 이하 단위 생략), 채소(47), 과수(54), 화훼(19), 특작(40), 한우(84), 낙농(6), 양돈(37), 양계(5), 복합(159) 등으로 분포하며, 업종별 분포는 생산(344), 생산+유통(118), 유통(93), 자재공급(22), 관광농원(2) 등이다. 여기서 생산은 농작업 대행을 포함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은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자재공급은 농자재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육묘 등을 포괄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는 최소 3명부터 최대 1,986명까지 분포하고, 조합원 수별로는 10명 미만(376개소, 이하 단위 생략), 10~20명(118), 20~50명(43), 50~100명(17), 100~500명(19), 500~1,000명(3), 1,000명 이상(3) 등이다. 평균 조합원 수는 29.5명이

⁴⁾ 고천암 간척지는 해남농지개발조합이 시공하고 있는 간척지로 1988년 10월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현재 개답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총매립지 3,711ha 중에서 농지조성 면적이 1,700ha로 계획되어 있다.

고, 작목별 평균 인원수는 쌀(7.6인, 이하 단위 생략), 채소(25.3), 과수(78.3), 화훼(14.3), 특작(58.8), 한우(10.6), 낙농(24.2), 양돈(17.4), 양계(6), 복합(39.9) 등이다.

표 3-2 영농조합법인의 작목별 업종별 분포(1994.6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생 산	유 통	생산+유통	자재구매	관광농원	누 계
쌀	120(20.7)	7(1.2)	1(0.2)	-	-	128(22.1)
채 소	24(7.0)	9(1.6)	12(2.1)	2(0.4)	-	47(8.1)
과 수	14(2.4)	18(3.1)	17(2.9)	5(0.9)	-	54(9.3)
화 훼	5(0.9)	5(0.9)	9(1.6)	-	-	19(3.3)
특 작	14(2.4)	12(2.1)	12(2.1)	2(0.4)	-	40(6.9)
한 우	44(7.6)	8(1.4)	29(5.0)	3(0.5)	-	84(14.5)
낙 농	3(0.5)	-	1(0.2)	2(0.4)	-	6(1.0)
양 돈	20(3.5)	5(0.9)	9(1.6)	3(0.5)	-	37(6.4)
양 계	4(0.7)	1(0.2)	-	-	-	5(0.9)
복 합	96(16.6)	28(4.8)	28(4.8)	5(0.9)	2(0.4)	159(27.5)
합 계	344(59.4)	93(16.1)	118(20.4)	22(3.8)	2(0.4)	579(100.0)

표 3-3 영농조합법인의 업종별 조합원수별 분포(1994.6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생 산	유 통	생산+유통	자재구매	관광농원	누 계
10명 미만	257(44.4)	47(8.1)	59(10.2)	11(1.9)	2(0.3)	376(64.9)
10~20	64(11.1)	22(3.8)	29(5.0)	3(0.5)	-	118(20.4)
20~50	16(2.8)	6(1.1)	20(3.5)	1(0.2)	-	43(7.4)
50~100	5(0.9)	6(1.1)	3(0.5)	3(0.5)	-	17(2.9)
100~500	2(0.4)	10(1.7)	6(1.1)	1(0.2)	-	19(3.3)
500~1000	-	1(0.2)	-	2(0.4)	-	3(0.5)
1000명 이상	-	1(0.2)	1(0.2)	1(0.2)	-	3(0.5)
합 계	344(59.4)	93(16.1)	118(20.4)	22(3.8)	2(0.4)	579(100.0)

표 3-4 영농조합법인의 업종별 평균 조합원수 및 출자액(1994.6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생 산	유 통	생산+유통	자재구매	관광농원	전 체
조합원 수	10.5 (14.7)	63.9 (223.2)	38.4 (166.8)	134.6 (299.5)	5.0 (0.0)	29.5 (133.4)
출 자 액	108.5 (158.6)	135.8 (154.0)	144.8 (174.4)	128.7 (166.9)	144.0 (21.2)	121.2 (161.7)

주: () 안은 표준편차임.

그리고 출자총액은 최소 1백만원부터 최대 10억5천만원까지 분포하며, 액수별로는 5천만원 미만(198개소, 이하 단위 생략), 5천~1억원(180), 1~2억원(101), 2~3억원(48), 3~5억원(28), 5억원 이상(24) 등이다. 조합당 평균 출자총액은 121백만원이며, 작목별 평균 출자액은 쌀(77.5백만원, 이하 단위 생략), 채소(100.5), 과수(98.3), 화훼(119.4), 특작(125.1), 한우(189.0), 낙농(199.2), 양돈(196.8), 양계(114.0), 복합(113.3) 등이다.

또한 출자의 형태별로 보면, 농지 출자가 출자농가수 241호(41.6%)에 평균액이 85.6백만원이고, 현금 출자가 출자농가수 336호(58.0%)에 평균액 65.5백만원, 가축 출자가 출자농가수 84호(14.5%)에 평균액 143.3백만원, 농기계 출자가 출자농가수 231호(39.9%)에 평균액 35.4백만원, 그리고 기타 출자가 출자농가수 67호(11.6%)에 평균액 108.7백만원 등이다.

2.2.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특징과 유형 구분

2.2.1. 설립 동향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1993년부터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3년 6월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의 개정과 동년 12월의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원 자격 및 사업 영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영세소농적 협업농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본격적인 '협업경영(사업)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조합원 자격에서 종래에는 1ha 미만 농가 등으로 규모 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였고, 출자 범위에서도 종래에는 농지 출자자만의 현금 출자를 허용했으나 법 개정으로 현금만의 출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사업 영역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사업 구역이 연접시·군까지 확대되어 종래의 면단위 조합이 군지역을 초월하는 광역조합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사업 내용 또한 농산물의 가공·판매·수출 등으로 확대되어 종래의 생산법인적인 성격과는 다른 流通營農組合法인이 다수 설립되었다.⁵⁾

그 결과 초기에는 수도작 중심의 복합영농을 위한 생산조직으로 출발한 영농조합법인도 지대미의 공동출하 내지는 직판장 운영 등의 사업을 추가하면서 유통조직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수나 한우 등의 직판을 목적으로 한 유통조합법인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93년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신농정계획」에서 생산자조직의 육성을 중요 시책으로 확정하고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유통영농조합의 설립을 활성화시킨 요인으로 일조하였다.

이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이렇다할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 단계이지만, 그동안의 설립 동향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생산조합은 개별농가를 통합한 완전협업경영의 형태보다는 개별농가와는 별개의 사업체로 성립되는 경향이다. 특히, 농작업 수탁을 주로 하는 경우는 위탁영농회사의 사업과 다를 것이 없으나, 위탁영농회사에 비하여 사업 영역이 넓은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를 택하는 경향

⁵⁾ 제1호 유통조합법인은 전남 순창군의 「순창군농산물유통영농조합」(1993.1.6 설립)으로 알려진다.

이 강하다. 그리고 생산 부문에 가공·판매 부문을 추가하여 이른바 개별 생산·협동 판매를 적절하게 결합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생산조직과 같이 주로 勞動 結合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 공동이용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 유통영농조합은 지역단위의 조합을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단감영농조합의 경우는 밀양영농조합을 중심으로 9개 지역의 영농조합이 연합회 구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역별로 유통영농조합이 시도되는 품목으로는 단감(경남 일원), 사과(충북, 경북 일원), 밤(전남 광양군), 무화과(전남 영암군), 유자(전남 고흥군), 생강(전북 완주군), 약초(강원 정선군, 전남 여천군) 등이 있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은 농협법의 1도1조합 원칙에 반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⁶⁾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협동조합과 유사하며, 제도가 바뀌게 되면 협동조합(특수조합)으로 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년 7월 5일에 농림수산부가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방침」에 의거 전문조합을 인가함으로써(전북생강농협, 진도원예조합), 품목에 따라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의 형태가 양립하는 실정이다.

2.2.2. 영농조합법인의 존재 형태와 유형 구분

영농조합법인은 제도의 성립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영세농의 협업 경영에서 발단되고 있다. 더욱이 그 주된 목적은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集團的 土地利用이라고 할 수 있다.

⁶⁾ 1988년 이후 협동조합의 지도감독권이 시도지사에서 농협중앙회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농협법에 전문조합 설립 제한 규정(품목별 1도1조합 원칙)이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결합적인 협업경영은 좀체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단계의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와 농업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유사하여, 이미 1962년부터 농업생산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토지 결합을 필요로 하는 일반경종 부문의 협업경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부록 참조).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이 과연 집단적 토지이용을 위한 협업경영의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한번 깊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앞의 제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가의 조직화, 즉, 농가간의 연계 체계는 개별농가의 자기완결적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채용된다. 다시 말해서 개별경영이 발전 과정에서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으며, 특히 한정된 생산요소(특히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는 개별경영만의 한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가 상호간에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생산조직을 결성하는 등 외부의 경제 단위와 연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가간 조직화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市場 法則에 의한 농가간의 상호 연계로서, 농가간의 합의 형성이 시장 기능에 맡겨지는 형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생산 자재나 생산물의 공동구입 혹은 공동판매 등의 조직이 해당된다.

둘째는 개별농가의 직접적인 조직화로서, 농가의 직접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개별농가가 상호 연계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퇴비 교환 등과 같은 중간 생산물의 공동 이용, 노동력(품앗이)나 농기계 등의 교환 및 공동이용 등의 형태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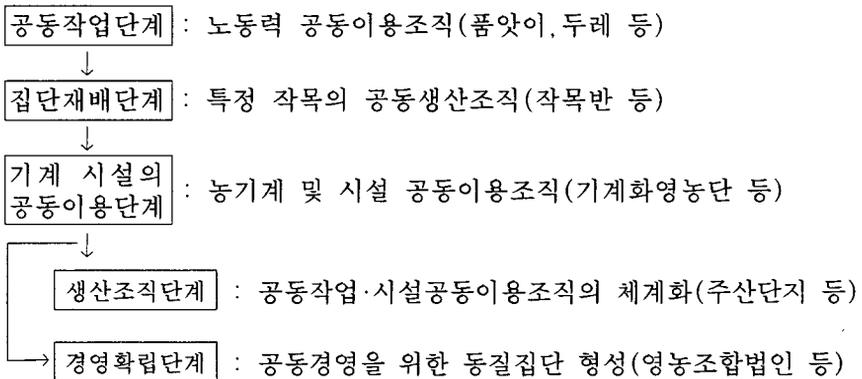
셋째는 시장 법칙과 조직화 법칙이 혼합되는 조직화로서, 농업의 특성상 시장 법칙에만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地緣 組織이나 血緣 組織과 같은 조직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농지 임대차, 농작업 수위탁 등의 조직이 해당된다.

더욱이 이러한 조직의 형태는 개별농가 스스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개별농가를 둘러싼 농업 여건의 변화, 특히 농업기술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에 알맞는 조직 형태가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2〉는 그동안 우리 농업의 현장에서 형성되어 온 생산조직의 형태를 모식적으로 구분해 본 것으로, 각각 시대적인 배경을 가진다.⁷⁾

그림 3-2 농업생산조직의 동태적 변화 형태



이러한 생산조직의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대체로 1960년대까지는 노동력의 공동이용이 주된 형태였으며, 70년대부터 기계 및 시설의 공동이용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는 기계의 공동이용이 진전되면서 토지의 조직적인 이용이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정책적으로 단지화를 추진하면서 집단재배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단계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력 공동이용조직이나 집단재배 조직과 같은 초보적인 형태의 생산조직이 아주 소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농업교역 조건의 악화와 이탈농의 증가는 초보적인 생산조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생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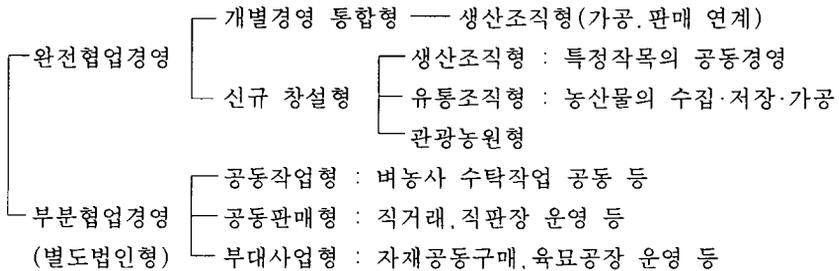
⁷⁾ 우리나라 농업생산조직의 동태적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윤수종(1992)을 참고할 수 있다.

직을 토대로 농자재 공동구입이나 농산물의 공동판매 등 시장 법칙에 의한 조직화로 발전하여, 거기에 법인화까지 가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절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향을 정리하였으나, 몇몇 완전협업 경영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농조합이 초보적인 생산조직의 형태를 법인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현존하는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는 <그림 3-3>과 같이 대체적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3 영농조합법인의 유형화



먼저 영농조합법인은 개별농가(조합원)와의 관계에 따라 완전협업경영과 부분협업경영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완전협업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전체에 개별농가가 참여하는 형태이고, 부분협업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또한 완전협업은 개별농가의 농업경영이 영농조합법인에 통합되거나 혹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부분협업은 개별경영은 그대로 존재하고 필요한 사업을 별도의 경영으로 독립시킨 형태이다.

그림의 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본래 형태인 소위 協業農場은 개별경영 통합형인 동시에 또한 생산조직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과 연계된 가공·판매사업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대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협업경영의 두번째 형태로는 신규 창설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별농가의 농업경영이 거의 소멸된 상태로서 농가 단위의 생산이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특정작목(예:유리온

실)을 공동경영하는 생산조직형, 조합원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저장·가공하여 판매하는 유통조직형, 그리고 관광농원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분협업경영은 개별농가 단위로는 불가능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함으로써 조합원 농가의 농업경영을 보완해주는 정도의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농가는 종래와 같은 농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한다.

이러한 형태로는 농기계를 공동이용하여 벼농사의 수탁작업을 행하는 공동작업형, 조합원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나 직판장 운영 등과 연계하는 공동판매형, 그리고 농자재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육묘 등에서 개별농가를 협력하는 부대사업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경영관리 실태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경영관리 실태는 어떠한가? 다음 장의 구체적인 경영분석에 앞서 개괄적인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 분석을 위하여 1993년 4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165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농업 법인경영의 실태에 관한 조사」(부록의 조사표)를 우편조사로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회수된 조사표 가운데 답변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40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수도작이 9개소, 시설원예와 축산이 8개소, 특작이 6개소, 채소가 4개소, 그리고 과수와 농산물유통이 각각 3개소이다.

3.1. 법인 설립의 동기와 성과

먼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주된 이유를 보면, 협업을 통한 경영규

모의 확대가 32.5%로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농기계나 시설의 공동이용(30.0%), 복합영농이 가능하기 때문에(10.0%), 겸업수입의 획득(10.0%), 노동력 해소(5.0%) 등 개별경영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도 전체 55%로서 상당수에 이르며, 단순히 정책적인 보조금의 수혜를 겨냥한 설립도 12.5%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립 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달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57.5%, 아주 만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17.5%로서 전체의 7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으로 얻게 된 가장 큰 이익으로서는, 생산의 규모화를 통한 소득 증대(45.0%), 부대사업을 통한 농외소득의 획득(22.5%), 작업의 공동화를 통한 여유있는 농업의 실현(22.5%), 기타(10%) 등으로서, 대부분이 경영규모 확대 또는 부대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의 증가를 가장 높게 꼽았다.

표 3-5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기와 성과에 대한 의견

문	항	응답내용	비율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주된 이유	규모확대의 수단	32.5%	32.5%
	기계·시설의 공동이용	30.0	30.0
	복합영농 가능	10.0	10.0
	정부 보조금 수혜	12.5	12.5
	겸업수입 획득	10.0	10.0
	노동력부족 해소	5.0	5.0
	기 타	15.0	15.0
위와 같은 설립 목적의 달성 정도	대체로 달성	57.5	57.5
	거의 이루지 못함	20.0	20.0
	아주 만족한 수준	17.5	17.5
	기 타	5.0	5.0
법인 설립으로 얻게 된 가장 큰 이익	생산의 규모 확대	45.0	45.0
	부대사업 가능	22.5	22.5
	작업의 공동화	22.5	22.5
	기 타	10.0	10.0

표 3-6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에 대한 의견

문	항	응답내용	비율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모태가 된 조직		뜻을 같이하는 개인	40.0%
		공동생산조직	30.0
		지역 친목단체	25.0
		공동출하조직	5.0
영농조합법인의 조직체적 성격		기능조직	52.5
		지연조직	40.0
		혈연조직	5.0
		기 타	2.5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 농가와의 관계		별개의 협업경영	52.5
		생산공동체적 협업체	25.0
		가공판매를 위한 조직	15.0
		기 타	7.5

다음으로 현재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이전에 어떠한 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의 성격은 어떠한가를 <표 3-6>에서 정리하였다.

먼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적 기반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개인(40.0%), 작목반과 같은 공동생산조직(30.0%), 영농회 등 지역의 친목단체(25.0%), 그리고 공동출하조직(5%) 등의 순으로, 설립 이전에 이미 일정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어 이를 법인화한 경우가 60%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품목별 작목반과 같은 생산조직과 영농회 등 지역의 친목단체가 모태가 된 경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합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먼저 영농조합법인의 조직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기능조직(52.5%), 지연조직(40.0%), 그리고 혈연조직(5.0%) 등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경제 합리성에 기초한 기능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농사와는 별개로 창설한 협업경영(52.5%), 개별농가가 합친 생산공동체적

협업경영(25.0%), 농업경영보다는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위한 조직(15.0%)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조합이 협업경영체이지만 개별경영과는 독립된 별개의 경영체로 설립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개별경영을 대체하는 경영체라기보다는 개별경영을 보완하는 경영체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법인경영의 운영과 관리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표 3-7>, <표 3-8>, 그리고 <표 3-9>로 정리하였다.

먼저 <표 3-7>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하여 리더의 선출 방식 및 권한, 운영 방침의 결정 방법, 운영 방식의 만족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조합장 및 부서 책임자의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대화를 통한 호선(67.5%), 투표로 선출(30.0%), 순번제(2.5%) 등으로, 대화를 통한 호선을 채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조합장 및 부서 책임자의 권한은 목표를 제시하는 정도(57.5%), 목표 제시는 강하나 구속력이 없는 경우(27.5%), 아주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경우(15.0%) 등으로, 회사의 사장과 같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 조합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운영 방침의 결정 방식도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한 조합이 50.0%를 차지하고, 각 부서의 책임분담제, 위의 두 가지를 병행한 경우, 조합장이 주도하는 경우가 각각 15.0%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조직체의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특히 개별농가와는 별도의 협업경영체로 설립된 경우에 조합장의 경영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서는 현상태로 만족하는 의견이 72.5%, 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7.5%로서, 아직

까지는 운영 방식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반응하여, 조합형 법인의 전원합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사업의 신속성에 부합되지 못하며,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대표자(조합장)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권한과 운영방침 결정에 대한 의견

문	항	응	답	내	용	비	율
조합장 또는 부서 책임자의 선출방식	대화를 통한 호선	67.5%					
	투표로 선출	30.0					
	순번제	2.5					
조합장 또는 부서 책임자의 권한	목표제시 정도	57.5					
	구속력은 없음	27.5					
	구속력도 강함	15.0					
운영방침의 결정방식	조합원 전원합의 원칙	50.0					
	각 부서의 책임분담제	15.0					
	두 가지를 병행하여	15.0					
	조합장이 주도	15.0					
	기 타	5.0					
현행 운영방식의 만족 여부	현상대로 좋음	72.5					
	앞으로 바꿀필요 있음	27.5					

한편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먼저 운영 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는 사항은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의 명확화(40.0%), 신속한 방침 결정(25.0%), 명령 계통의 철저(12.5%), 조합원의 의사 반영(7.5%), 기타(17.5%) 등으로, 조합원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가장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의 범위가 다르고 사업 영역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합의와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이 중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관리 능력이 미흡한 반면에 사업 추진에서는 신속한 방침 결정과 명령 계통의 철저 등이 요구되므로, 이 과정에서 대표자와 조합원간의 불협화음이 제기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결과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에는 조직의 우선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 즉,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5.0%,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32.5%, 그리고 개인의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2.5% 등이었다.

특히 완전협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은 조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개별농가와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영농조합법인의 운영방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문	항	응답내용	비율
현재의 운영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	역할분담과 책임범위		40.0%
	신속한 방침결정		25.0
	명령계통 철저		12.5
	조합원의 의사반영		7.5
	기 타		17.5
원만한 운영을 위한 개인과 조직의 관계	조직이 우선		55.0
	사안에 따라 판단		32.5
	개인 존중		12.5

표 3-9 영농조합법인의 회계 관리와 성과 배분에 대한 의견

문	항	응	답	내	용	비	율
경리장부의 기록방식		간이기장 수준				67.5%	
		복식부기 기장				32.5	
조합원의 보수 결정방식		월급제로 지급				47.5	
		일당제로 지급				20.0	
		미지급				32.5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른 성과배분		미지급				55.0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				25.0	
		일부에게만 지급				20.0	

다음으로 경리장부의 기록 방식, 조합원의 보수결정 방식,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른 성과 배분 등의 실태를 정리한 것이 <표 3-9>이다.

경리장부의 기록 방식을 보면, 간이기장 수준이 67.5%이고 複式簿記 記帳이 32.5%로서, 대부분의 조합이 간이기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간이기장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영농조합 내부에 보고되는 경영실적 자료로는 간이기장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식부기를 기장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회계 사무원을 두거나 혹은 공동으로 회계사를 이용하는 형태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경영은 결산보고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의 기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원 보수의 결정 방식은 월급제가 47.5%, 일당제가 20.0%, 미지급이 32.5% 등으로 월급제가 정착된 경우가 가장 많으나, 미지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의 경우는 아직 사업이 본궤도에 도달하지 않아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른 성과 배분도 미지급이 55.0%,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조합이 25.0%,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조합이 20.0%로서 대부분이 아직 성과 배분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경영관리 기능은 조직 형태와 경영 목적 및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각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새로운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3. 영농조합법인의 발전 조건과 향후 의향

끝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발전 조건과 향후의 의향에 대해서 검토한다.

여기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후에 있었던 해산 위기에 대한 경험과 그러한 위기의 원인, 경영에 대한 향후 의향, 그리고 현재의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표 3-10>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설립 후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위기가 있었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77.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산 위기의 원인으로는 운영 자금의 취약(42.9%), 수익 배분의 문제(21.4%), 수익성 저하(7.1%), 기타(28.6%) 등이었다. 설문 내용 중에는 조합원간의 불화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확대하게다는 조합이 82.5%로 단연 우세하였으며, 현상태의 유지가 10%, 그리고 사업 규모의 축소 의향이 7.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운용(33.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개선(17.5%), 경영규모의 확대(13.8%), 부대사업의 확충(11.3%), 조합원간의 화합(8.8%) 등의 순이었다.

표 3-10 영농조합법인의 문제점과 당면과제에 대한 의견

문항	응답내용	비율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위기 경험 여부	없었다	77.5%
	있었다	22.5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위기를 초래한 원인	운영자금등 자금취약	42.9
	수익 배분문제	21.4
	수익성 저하	7.1
	기타	28.6
영농조합법인의 향후 발전 의향	사업규모의 확대	82.5
	현재 사업규모 유지	10.0
	사업규모 축소	7.5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자금조달과 운용	33.8
	경영의 개선	17.5
	경영규모의 확대	13.8
	부대사업의 확충	11.3
	조합원의 화합	8.8
	기타	14.8

영농조합법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경영규모 확대나 부대사업의 확충은 결국 사업 자금의 조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자금 부족은 일반농가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그 신용력에 비하여 정책자금 등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규모 확대보다도 경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경영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합도 적지 않다. 사실, 지금까지 영농에만 전념해 온 농가로서는 기업경영적인 요소가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실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관리 능력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많은 영농조합법인들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회사 경영 기법과 같은 경영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끝으로 이상에서 집계한 의견 조사는 설립된지 1년 이상을 경과한 영농조합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운영 상태를 가지고 영농조합법인 전체를 논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들 중 대부분은 별다른 정책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온 관계로, 법인경영의 운영면에서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언해야 할 것은 영농조합법인은 정책적 위상이 모호하게 출발하여 설립 동기에서부터 부실 운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영세소농(1ha 미만 농가)의 생산공동체적인 협업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법인경영의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은 거의 없이 출발한 관계로, 특히 1993년 이전에 설립된 영농조합은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지구입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영농자금 등의 지원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며, 법인이 아닌 조합원 농가의 명의로 용자를 수혜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도 체계의 미비도 지적된다.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교육기회도 없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대응은 현황 집계에 불과하며, 영농조합을 준조합원으로 대우해야 할 농협은 오히려 경쟁의식까지 가지는 실정이라는 것이 많은 영농조합법인에게서 표출되고 있는 불만 사항이다.

따라서 소수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가 어떠한지는 잘못 비약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앞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파산한 영농조합법인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형태로 성장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따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

제 4 장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성과 사례분석

1. 분석대상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개요

이 장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농조합법인을 사례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경영의 성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분석대상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1992년도까지 설립된 90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재의 운영 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로 하여,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을 방문조사하고, 여의치 못한 일부 영농조합은 전화에 의한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락이 두절되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 및 농촌지도소에 문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파악한 90개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설립 이후 금년까지 조합원의 공동작업 또는 협업경영이 유지되면서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농조합법인은 <표 4-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전체의 절반인 총45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 1990~92년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개요

	사업수행중	공동사업없음	파 산	합 계
생 산 조 직 형	31	41(32)	1	73
생 산 · 판 매 장 형	7	3	-	10
유 통 조 직 형	3	-	-	3
자 재 공 동 이 용 형	2	-	-	2
관 광 농 원 형	2	-	-	2
합 계	45	44	1	90

주 : () 안은 전남 해남군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임.

구체적으로 '사업수행중'으로 집계된 45개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목적의 달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법인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에 '공동사업 없음'으로 집계된 44개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명목상 설립에 불과한 전남 해남군의 3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소는 초창기에 공동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이 중단된 12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 설립후 정책적인 지원(보조사업의 대상)에 의한 사업 확장을 기대하였으나, 계획 차질로 인하여 대표자만 남고 개별농가로 환원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현재 상황은 조합 관계자와의 연란 두절로 인하여 관할 군청이나 농촌지도소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부분적으로 파악한 사업 중단의 이유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개별경영으로의 복귀라는 의견이었다.

한편 해남군의 32개 영농조합법인은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척지 공동분배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중 일부의 영농조합법인은 간척지를 분배받은 후에 공동작업을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는 곳도 있으나 그 향방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리고 파산한 영농조합은 1개소(김제 태농조합)로 수도작 작업수탁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설립 등기만 하고 거의 운영되지 못하다가 금년에 해산된 경우이다.

현재 조업중인 것으로 파악된 45개 영농조합법인을 사업 형태별로 구분하면, 生産組織型이 31개소,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生産·販賣場型이 7개소, 流通組織型이 3개소, 그리고 資材共同利用型和 觀光農園型이 각각 2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조직형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되는 31개소 중에서 생산공동체인 협업경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개소이고, 나머지 21개소는 수도작의 농작업 대행을 위한 공동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들 농작업 수탁조직은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을 모태로 하여 법인화한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委託營農會社와 거의 동일한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제도 발족 초기의 위탁영농회사는 농작업 대행 이외의 사업은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사업 영역이 넓은 영농조합법인을 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1991/92년도에 설립된 충남 예산군의 8개 영농조합법인(삼다리, 광시, 오촌, 월평, 응봉, 고덕, 신암, 벌말)은 모두 영농후계자가 중심이 된 기계화영농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군의 설립 지원(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1,500만원 지원)을 계기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중에는 '○○위탁영농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의 본래 취지인 협업경영으로 정착하고 있는 곳은 10개소 정도로 파악되며, 이들 영농조합은 복합경영과 전문경영으로 구분된다. 복합경영으로는 활빈두레영농조합(경기 화성군), 보은영농조합(충북 보은군), 증평영농조합(충북 괴산군) 등을 들 수 있으며, 전문경영으로는 파주홍농영농조합(경기 파주군; 화훼), 재산영농조합(강원 평창군; 시설원예), 선진영농조합(강원 평창군; 감자), 부여버섯영

농조합(충남 부여군: 버섯), 태산영농조합(전북 정읍군: 양돈), 함평영농조합(전남 함평군: 한우), 진양영농조합(경남 진양군: 시설원예) 등을 들 수 있다.

생산·판매장형은 모두 7개소로서 공동생산보다는 별도의 직판장 설치 등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며, 그밖에 지역 단위의 농산물 공동판매조직(3개소) 또는 농자재 공동구매조직(2개소), 관광농원(2개소)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사업형태별 법인경영의 성과 분석

2.1. 생산조직형

2.1.1. 법인화의 동기와 전망

생산조직형의 법인화의 동기는 주로 기존에 조성된 기계화영농단이나 작목반 혹은 노동력 공동이용조직 등을 모태로 하여 지역 단위로 결성된 地緣組織으로서, 주로 수도작 경영에서 농기계나 시설의 공동이용 및 공동작업을 통한 규모 확대를 설립 동기로 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화의 초기 단계에는 생산 요소, 특히 노동력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 경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으나, 점차적으로 생산 요소를 통합 내지는 재결합하여 새로운 경영 단위로서의 규모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조직의 법인화는 조직 그 자체만을 법인화한 독립적인 경영체이며,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은 각자의 농업경영을 개별적으로 유지하면서 수탁작업의 협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유로 생산조직형인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농작업의 수탁 과정에서 전업농가나 위탁영농회사와 경합 관계에 있으며, 작업량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강외후계자영농조합(충북 청원군)이나 대호영농조합(충남 당진군) 등과 같이 사업의 확대 내지는 업종 전환을 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작업 수탁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여하에 의하여 사업의 수익성 및 경영의 존립이 좌우되므로, 예를 들어 농기계 감가상각 적립금을 축적하지 못하는 법인경영은 앞으로 기존 농기계의 내용연수에 도달하는 시기에 업종 전환 내지는 법인 해산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1.2. 「영농조합법인 청천홍농사」의 경영 사례

(1) 설립 동기

영농조합법인이 소재한 김해군 진례면 청천리는 경남도의 평야지대로서, 지금도 수도작과 시설원예가 중심인 130호의 마을로 큰 부락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농외취업을 위주로 하는 겸업가구이거나 비농가로서 수도작 전업농가는 4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농업생산은 상대적으로 크게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농업 여건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청장년의 이농이 가속화되어 휴경되는 논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평소 이 지역의 친인척을 자주 방문하던 현재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김동광, 40세)가 이 지역에서 영농을 하기로 결심하고 1979년 부산에서 이주하여 영농을 시작하였다.

비닐하우스에 시설원예를 시작한 그는 자신의 영농보다도 지역농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후계자 조직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마을의 청년들을 규합하여 마을영농회를 결성하여 농작업을 공동으로 대행하는 수탁작업조직으로 발전시켰으며, 후계자를 중심으로 시설원예 작목반도 결성하였다.

1990년초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영농조합법인 제도가

입법화되기에 이른 그 해 6월에 그는 후계자 조직을 법인화하여 지역 농업을 담당할 항구적인 경영체로 정착시킬 것을 구상하게 되었다. 즉시 후계자 4명과 그들의 부모를 설득하여 법인 설립의 최소 인원(5인)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지도를 받아 1990년 11월 26일에 전국 최초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발족하게 되었다.¹⁾

(2) 발전 과정

「영농조합법인 청천홍농사」는 발기인이자 조합원인 후계자 5인이 각각 10만원씩(1만원 10구좌) 출자하여 초기 출자액 500만원으로 수도작 수위탁경영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여기서 출자액은 모두 현물 출자를 평가한 것으로, 당시 출자내역을 보면 경운기 1대, 이앙기 1대, 분무기 1대, 양수기 1대 등이 전부이다.

이듬해 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소형트랙터, 보행이앙기, 콤팩트 등을 구입하고 임차지 5ha와 부분수탁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는 조합원의 소유농지가 지역개발 전용지로 일부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출자액을 증액하여(총 1억 3,000만원) 본격적인 대형 기계화 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3) 구성원 및 조직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되어 각각 대표·감사·총무·영농부·구매부를 담당하고 있다. 경영의 의사 결정은 완전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경리 및 장부 정리는 총무가 관할한다.

사업 부문은 수도작 수탁작업과 시설원에 경영으로 구분되며, 수탁

¹⁾ 청천홍농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3개월 전부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준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겪은 설립 절차상의 사무적인 경험(등기 절차, 세무 관계 등)은 농림수산부의 지침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다.

작업은 5인 공동작업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시설원예는 개인별 분담관리를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동작업을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5인 모두가 농기계 운전자이므로 보조 노동력은 마을에서 임시고용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다.

(4) 사업 및 경영규모

1994년도의 사업 규모는 수도작 임차지 15ha, 부분작업 수탁 30ha, 시설원예 4,000평, 그리고 금년부터 한우 6두를 입식하고 있다.

표 4-2 청천홍농사의 1993년도 수지결산 내역

부 문	생 산 액	경 영 비	소 득
수 도 작	122,500천원	49,100천원	73,400천원
(임차지)	30,000		
(임작업)	92,500		
부 산 물	4,500	-	4,500
시설원예	30,000	9,100	20,900
합 계	157,000	58,200	98,800

(5) 경영의 성과 및 특징

1993년도의 수지결산 내역을 정리하면(표 4-2), 소득 총액이 98,800천원으로 사업부문별로는 수도작이 73,400천원, 시설원예가 20,900천원, 그리고 부산물 수입이 4,500천원 등이다.

소득 총액은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자 수행한 공동작업의 내용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노동 평가를 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다. 다만, 분배 총액은 소득 총액에서 먼저 농기계의 갱신비를 대비한 농기계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 1인당 연간 보수는 1,500만원 수준이며, 별도의 출자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금년에 한우 사업을 추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마을의 수도작 농사를 거의 대부분 경작하는 지역농업의 경영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위탁농가는 농외 취업 또는 시설원예에 전념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또한 높이 평가되고 있다.

2.2. 협업경영형

2.2.1. 법인화의 동기와 전망

협업경영형의 법인화의 동기는 생산공동체 내지는 협업농장의 이념적으로 설립된 경우(활빈두레영농조합, 증평영농조합 등), 영세소농 극복을 위한 복합경영과 부대사업을 추구하는 경우(파주홍농영농조합, 보은영농조합, 함평영농조합 등), 전문화된 생산단지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을 계기로 설립된 경우(재산영농조합, 선진영농조합, 태산영농조합, 진양영농조합 등) 등으로 대별된다.

전문적인 생산단지로 발족한 영농조합법인은 재산영농조합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조합원 14명이 농지 8,000평을 출자하고, 평창군수의 지불보증으로 농협의 대출을 받아 20억원을 투자하여 1,500평 유리온실 4동과 5만톤 규모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협업경영형 법인경영의 가장 큰 의의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영농자산의 공동소유와 완전협업을 통한 전문화 혹은 복합화의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생산면에서는 협업을 통한 대규모 경영의 유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농산물 가공사업 등의 도입을 통한 추가 소득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협업에 대한 인식과 농지를 비롯한 조합원 공동소유 자산의 확보 여하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업체로서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경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2.2. 「증평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사례

(1) 설립 동기

증평영농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협업농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던 유일한 협업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대표자(송재중, 64세)는 1963년에 군복무를 마친 후, 당시에 농민운동 차원에서도 부각되고 있던 협업농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농장을 계획하고, 뜻을 같이 하던 8인을 규합하여 1969년 3월 25일에 '증평 새마을 협업농장' (약칭, 증평협업 이상촌)을 설립하였다. 당시 괴산군은 농특사업의 일환으로 협업농장 설립을 지원하고, 농장의 권리 소유를 괴산군청으로 하도록 하였다.²⁾

또한 괴산군청은 균유지인 하천부지 20,000평을 임대형태로 협업농장에 지원하고 20,000평의 소유농지(구입 10,000평, 안동준씨 기부 10,000평)과 함께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을 정비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협업농장은 그 후 창립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고, 괴산군내의 희망자 모집하여 충원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제도의 발족으로 농장명의를 괴산군청에서 증평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고 1991년 7월 23일에 설립 등기를 하였다.

(2)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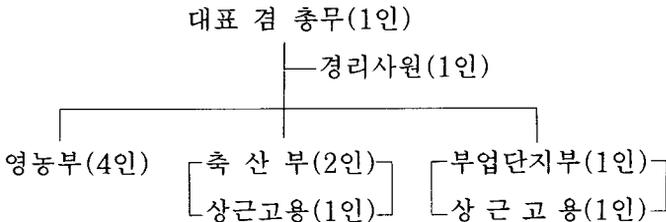
초창기의 증평새마을협업농장은 농특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과 공업을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농장, 산업기술학원, 가발 및 편물 등의 공장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나, 학원과 공장은 운영 부실로 폐쇄되었고, 농장만이 협업경영의 형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²⁾ 협업농장의 공동소유(농장 명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한 관계로 괴산군청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이었다.

1970년에는 구성원 2인이 추가되기도 하였으나 농장의 경영규모에 비추어 8인 이상의 인력은 과잉이라는 판단하에 현재까지 같은 노동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서 1978년에 기계화영농단 지원을 받았고, 1984년에는 농가부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부대사업으로 콩나물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 영농조합법인으로登記되면서 군의 사업비 보조(700만원)를 수혜받았다.

(3) 구성원 및 조직



증평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철저한 사업부서별 책임분담제를 원칙으로 하여, 수도작과 발작물을 담당하는 영농부(4인), 양계를 중심으로 한 축산부(2인), 그리고 콩나물공장의 부업단지부(1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총괄하고 생산물의 판매 및 경영관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겸 총무(1인)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조합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리사무 1명, 계란 선별 1명, 콩나물공장 1명 등을 임시직으로 상근고용하고 있으며, 작업량에 따라 수시로 일용인부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가족은 영농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사업 및 경영규모

사업은 경종 부문, 축산 부문, 부대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1992년도의 경영규모는 경종 부문에서 자경농지의 수도작 10ha, 부

분작업수탁(경운 30ha, 이앙 15ha, 수확 200ha 등), 그리고 전작(고추, 호박, 무, 배추, 옥수수, 사료작물 등)이 1.2ha이다.

축산 부문은 양계 10,000수(평사육 방식으로 유정란 생산), 양돈 35두, 그리고 한우 11두 등이다. 부업단지 부문으로 콩나물공장은 연간 18,000상자를 생산하는 규모이며, 그밖에 농장부지 및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표 4-3 증평영농조합의 1992년도 수지결산 내역

부 문	생 산 액	경 영 비	소 득	순 수 익
일반경종	100,800천원	19,960천원	80,840천원	43,752천원
(답 작)	70,639			
(전 작)	10,880			
(임작업)	19,281			
축 산	143,200	101,757	41,443	2,970
(양 계)	115,667	76,138	39,529	2,557
(양 돈)	3,693	3,690	3	△470
(한 우)	23,840	21,930	1,911	911
부업단지	94,717	69,340	25,377	4,824
농외수입	14,665	-	14,665	11,650
합 계	353,381	191,057	162,324	63,196

(5) 경영의 성과 및 특징

1992년도의 수지결산 내역을 보면(표 4-3), 연간 소득총액이 162,324천원이고, 사업부문별로는 일반경종 80,840천원(50%), 축산 41,443천원(25%), 부업단지 25,377천원(16%), 농외수입 14,665천원(9%)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원의 급여 지급은 월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농번기와 농한기를 감안하여 노동 강도별로 노동보수를 산정하고 있다. 즉, 연간을 A급(4, 5, 9, 10월), B급(3, 6, 7, 8, 11, 12월), C급(1, 2월) 등으로 구분하여 월별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그리고, 보수 지

급과 출자 배당 후의 당기순이익은 적립금화하여 시설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소득총액은 월급여 70만원 수준에 보너스와 배당금을 합하여 일인당 연간 2,000만원 수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는 주택 및 자가소비 식량을 제공하고 공과금(의료보험 포함)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도 혜택으로 주어진다. 또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공상치료비 등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며, 일요일 휴무 및 토요일 순환근무제 실시 등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영농조합의 조직 운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부장 책임하에 경영 개선과 분야별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경영관리자(총무)에게 구매·판매 등의 경영 활동의 전반을 일임하고, 조합원 각자는 전담 분야별 생산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분업화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2.3. 가공·판매형

2.3.1. 법인화의 동기와 전망

가공·판매형의 법인화의 동기는 주로 지역 단위의 생산농가가 직접 생산과 연계된 부대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조직(청봉영농조합, 남농영농조합등)이거나,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단체(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을 통하여 조합원 농가의 소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영농조합법인 약선원), 지역 단위의 농민 조직을 기반으로 가공·판매업에 진출하여 가공공장 또는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남농영농조합, 금릉한우영농조합 등)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경영 형태는 조합원 각자의 농업생산은 개별적으로

유지하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된 별도의 가공·판매사업은 전임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합원 농가는 법인경영에 전임할 수도 있으며, 혹은 법인경영에 가공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은 판매·유통사업에 거의 경험이 없는 농민이 전임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 전임자의 전문성 확보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축산농가가 결합하여 식육판매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존의 식육판매상과의 경쟁에서 기술적인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2.3.2. 「남농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사례

(1) 설립 동기

전남 남원군은 영농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적 조직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에 속한다. 남농영농조합법인도 본래는 남원군 덕과면을 중심으로 하여 1989년에 결성된 남원농민회가 모태가 되고 있다.

남원농민회는 후계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 결성과 동시에 쌀 직거래사업을 시작하였고, 판로의 확대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기업경영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법인경영으로 발전한 형태이다. 1992년 10월 6일에 출자자 16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2)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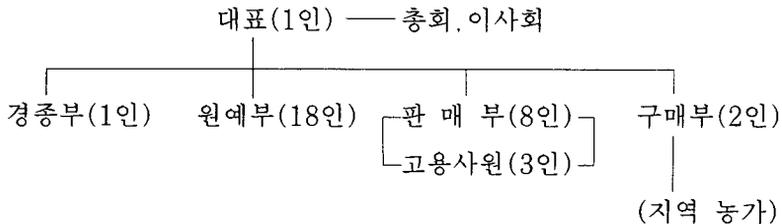
1989년에 8농가가 남원농민회를 결성하고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한 협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해에 8농가가 총800만원을 출자하여 12.5톤 트럭을 구입하고 농자재 공동구매, 토종꿀 판매, 쌀 직거래, 투묘 보급 등에 착수하였다.

1990년에는 쌀 직거래 사업을 확장하여 주사업지역인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 단지에 월평균 300가마의 쌀을 직거래하게 되었으며, 남원쌀이라는 20kg 단위의 소포장미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1991년에는 상설 직매장(성남시 1개소)을 설치함으로써 고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힘입어 1992년에 출자자 16명(출자액 1억 3,130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 재발족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결미공장을 건설하고 지대미를 '춘향미'로 상표 등록하여 본격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덕과면의 원예작목반 농가 18명 전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원예사업을 추가하고, 기존의 쌀 판매장도 성남 4개소, 서울과 안산에 각각 1개소등 6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기업체 및 학교 식당을 대량 거래처로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3) 구성원 및 조직



남농영농조합법인은 법적인 형태는 전체적으로 조합형이면서도 판매 사업에 관해서는 회사형의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직영하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참여하고,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직판장 2개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자회사 형태의 판매장은 조합에 판매 수수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남농영농조합의 전체 조합원 30명은 직영 사업에만 참여하는 셈이며, 사업 부문별로 경종부, 원예부, 판매부, 구매부 등의 5개 사

업부서로 나누어진다. 특히 판매부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근적으로 3명을 고용하고 있다.

구매부는 판매부가 담당하는 청결미 가공·판매를 지원하는 소위 원료곡 조달이 주된 업무로서, 쌀 생산농가의 지연조직과 연계하고 있다.

(4) 사업 및 경영규모

1994년도의 주요사업은 경종사업으로 논 6,000평을 직영하면서 약간의 작업수탁을 병행하고, 농산물 집하장(부지 894평, 건평 112평)에 청결미 가공포장 설비(2.4t/h)를 갖추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6개소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결미 판매량은 월 평균 1,200가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예 부문은 금년 5월부터 착수하여 딸기모종 1,000평과 김장채소 3,000평을 재배하였다. 원예 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600평 규모의 자동화 유리온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표 4-4 남농영농조합의 1993년도 손익계산서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원료곡 구입비	739,647천원	청결미 매출액	831,433천원
인 건 비	57,118	경종 수입	8,175
일 반 관 리 비	17,333	기타 수입	491
직판장임대료	15,548	기말재고평가	6,503
영 농 비	4,657		
차입금 이자등	2,310		
고정자산평가손	3,735		
당 기 순 이 익	6,254		
합 계	846,602	합 계	846,602

(5) 경영의 성과 및 특징

남농영농조합의 경영 성과를 1993년도 손익계산서를 근거하여 살펴

보면(표 4-4), 매출 총이익이 9,829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625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아직 사업확장의 단계로서 출자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보수는 상근 종사자에게 월급여 50~8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정도이다.

이 조합의 운영상의 특징은 임직원의 인적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업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출자농가 이외의 참여 희망자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다양하게 참여시키고 있는 점이다. 발족 당시의 조합원 8명중에서 6명이 대졸자로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에 뜻이 있는 후계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도시 소비자를 준조합원(1994년도 출자액 1,300만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자본금의 확충은 물론, 이들과의 연계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2.4. 유통조직형

2.4.1. 법인화의 동기와 전망

유통조직형 영농조합법인의 법인화의 동기는 전문화된 농산물 공동 출하조직이 법인화된 경우(93년 이후에 설립된 품목별 전문조직의 유통영농조합), 영농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 단위의 농산물 판매조직을 결성하고 직판장 운영하는 경우(음성후계자유통영농조합, 순창후계자유통영농조합 등), 신용조합 등의 별도법인이 경제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원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경우(전의신협이 약선원식품, 왕궁신협의 왕궁영농조합 등)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특히 전의신협이나 왕궁신협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주된 동기는 일반적인 사업협동조합에서 추구되는 공동 구판 매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가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하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통조직형의 영농조합법인은 제3장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본래 전문적인 사업협동조합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협동조합과의 경쟁관계가 불가피하다. 다만, 1992년까지 설립된 유통영농조합은 생산자 조직으로서의 공동판매보다는 가공 부문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유통조직형의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경영의 존속과 직접 관련되는 농산물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수·축협 계통은 물론 품목별 특수조합과도 경쟁 관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4.2. 「왕궁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사례

(1) 설립 동기

1981년 현 대표자(권대식, 44세)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왕궁신용협동조합이 관내 조합원 농가의 협동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부터 양돈사업을 시작하여 오던 중, 1992년에 정부지원에 의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건립(사업기간: 1992.7~'93.2)을 계기로 그 해 4월 20일 영농조합법인을 독립시켰다. 따라서 신협의 조합원은 영농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2) 발전과정

왕궁영농조합의 모태인 왕궁신용협동조합은 1981년 조합원 15명과 출자액 28만원으로 설립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설립 이후 농가가 조합원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조합의 여건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상부상조와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각종 경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1984년에 양축농가의 사료공동 구판매 사업 및 양돈 계통출하사업을 시작으로 1986년에는 가축약품 공동 구판매사업을 확충하였으나, 이 단계까지의 사업들은 신협의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에 국한되

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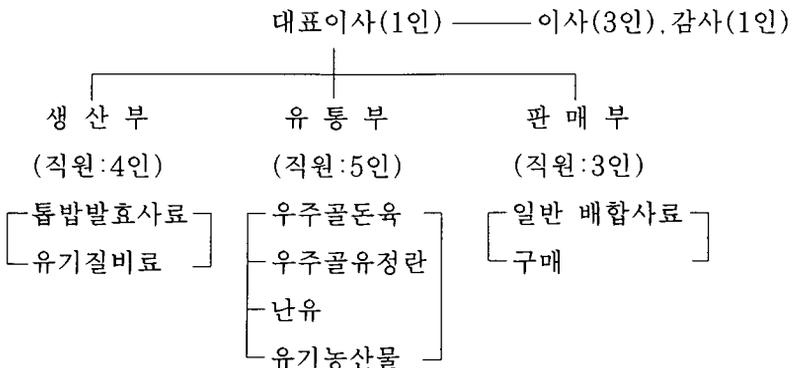
왕궁신용협동조합에 경제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7년부터의 일이다. 그 해에는 톱밥발효사료 공장을 설치하여 45호의 양돈농가(2,200두)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1988년에는 양계농가로 하여금 자연유정란을 생산하도록 지도하여 전국의 60개 신용조합을 대상으로 직거래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1992년에 경제사업 부문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발족시켰다. 법인 설립은 조합원 15명과 출자액 8억 9,940만원(조합원 농가의 가축)의 규모이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계기로 하여 톱밥발효사료를 급여한 돈육을 지역 지명인 '우주골' 이라고 명명하고 상표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판매망의 확충을 추진하였다. 직거래 대상도 기존의 60개 신용조합 외에 20여개소의 음식점으로 확대하였다.

1993년에는 사업비 10억 7,550만원(농발기금 보조 5억원, 융자 2억원, 자부담 3억 7천만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지역의 양돈농가 1,200호의 분뇨를 수집 처리하고, 발효퇴비를 생산하여 원예농가에 판매하는 등 사업 영역을 크게 확충하고 있다.

(3) 구성원 및 조직



왕궁영농조합법인은 출자농가와와는 별개의 법인경영을 설립하여 상근 임직원을 두고 경영하는 형태이다.

법인경영의 조직 구성을 보면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외에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사업 부문을 생산부·유통부·판매부의 3개 부서로 나누어 12인의 조합원이 상근 직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부서별로 생산부는 톱밥발효사료 및 유기질 비료의 생산을 담당하고, 유통부는 조합원 농가에서 생산된 돈육·유정란·난유·기타 유기농산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한다. 그리고 판매부는 일반 배합사료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4) 사업 및 경영규모

1993년도의 사업 실적을 보면, 수익사업으로서 사료 구판매 195천포, 톱밥발효사료 128천포, 자연유정란 1,959천개, 우주골돈육 1,044두 등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유기질비료 생산(93년 시험가동), 가축약품 구판매, 가축시범농장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비수익사업으로는 양돈 계통출하사업, 유선방송 사업, 가축사육 지도사업, 장학금 지급, 한방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한 1993년도 총매출액은 약46억원(계통출하 포함)에 달하고 있다.

표 4-5 왕궁영농조합의 1993년도 수익사업 실적

수 익 사 업 명	수 량	금 액
사료 구판매	195천포	972,659천원
가축약품 구판매	-	8,204
톱밥발효사료 판매	128천포	544,253
자연 유정란 판매	1,959천개	195,885
우주골 돈육 판매	1,044두	288,290
합 계		2,009,291

(5) 경영의 성과 및 특징

왕궁영농조합의 경영 성과를 1993년도 수익사업 실적에서 정리하면 <표 4-5>, 전체 총수익이 20억 9백만원에 달한다. 사업부문별 구성으로는 사료 구판매가 48%, 톱밥발효사료 판매 27%, 우주골돈육 판매 14%, 자연유정란 판매 10%, 가축약품 구판매 1% 등이다.

총수익 중에서 임직원의 보수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출자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으로 지급된다.

이 영농조합의 운영상 특징은 생산자의 판매협동조합(양계, 양돈, 유기농산물)으로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또한 지역단위 조합으로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공익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TV)은 낮시간대에 축산물 가격 제공 등 영농정보에 관한 5가지 프로그램 방영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지역의 영농후계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점도 평가되고 있다.

2.5. 기타 형태

2.5.1. 법인화의 동기와 전망

검토한 영농조합법인의 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농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즉, 지역농업 연구개발 및 영농지도의 구심체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상록영농조합), 생산을 위한 자재공급이나 육묘공장 운영 등을 담당하는 경우(남지영농조합, 진양영농조합 등), 관광농원을 법인화한 경우(내린영농조합, 미산영농조합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인경영의 성과로서는 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육묘, 농자재 공동구입의 유리성 실현, 또는 부대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식당 등을 겸업하는 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은 세제 혜택 등의 유리성이 있기 때문

에 법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5.2. 「상록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사례

(1) 법인 설립의 동기

상록영농조합법인이 입지한 경남 거창군은 시설원예, 특히 시설딸기의 주산지이며, 현재 대표자(이양우, 38세)는 1985년부터 딸기 축성 재배를 위한 육묘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야냉육묘 기술을 도입하여 그동안의 적응 시험을 거쳐 1992년에 품종(여봉)과 기술을 정착시킨 현장 연구자이다.

그는 이러한 기술개발과 영농지도를 항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딸기 농가 4호를 규합하여 1992년 12월 23일 영농조합법을 설립하였다.

(2) 발전 과정

현조합의 대표는 1988년부터 개인 사업으로 상록화원을 운영하다가 1992년에 본인을 포함한 조합원 5명과 출자금 3,200만원(현금 1,100만원 포함)으로 상록영농조합법을 설립하였다.

1993년에는 출자금을 증액(1,800만원)하여 총1억 2천만원(보조 5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의 사업비로 딸기 축성재배를 위한 야냉처리장(32평)과 육묘하우스(1,200평)를 건축하여 본격적인 야냉육묘센터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술지도에 돌입하여 지역농업의 기술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구성원 및 조직

상록영농조합은 출자자 5인이 모두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업부장을 겸임하여 기술개발 및 조합운영 일체를 전담하고 있다. 조합원 외에 육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자 2명을 상근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4) 사업 및 경영규모

표 4-6 남농영농조합의 1993년도 손익계산서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판 매 비 용	4,507천원	판 매 수입	30,521천원
인 건 비	14,945	사업외 수입	22,500
일반관리비	9,912		
제세공과금	357		
당기순이익	23,300		
합 계	53,021	합 계	53,021

상록영농조합법인은 수익사업의 목적보다는 기술개발과 보급이 주된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은 딸기의 종묘 생산에 한정된다.

현재의 가동 수준은 딸기 종묘를 연간 10만본 생산하는 규모이며, 그 밖에 부대사업으로 야냉육묘용 냉동설비 제작과 정원수 생산 등이 있다.

(5) 경영의 성과 및 특징

상록영농조합의 경영 성과를 1993년도 손익계산서로 정리하면(표 4-6), 총매출액 53백만원에서 인건비 등 제경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23백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건비는 상근 고용자의 보수에 해당되므로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의 보수는 없으며, 또한 당분간은 출자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금 일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상록영농조합은 공동생산이나 공동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서비스형 영농조합법인'으로서, 현재까지는 딸기 재배에 관한 연구와 지도 기능만을 수행하는 특수한 사업 목적의 법인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농가의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동시에, 농가의 판매 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수출 상담 등과 같은 알선 기능만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그동안 우리 농업은 가족농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농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별농가의 자기완결적인 발전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농가간의 조직화 내지 협업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협업경영은 영세농의 집단조직으로서 규모 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근대적인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경영의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협업경영은 이미 1960년대부터 논의되어 온 경영 형태이며,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협업농은 법적인 지위가 없는 소위 '무허가 사업체'인데 반하여, 현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는 어엿한 농업법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농업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법인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패 여부가 앞으로의 농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제도 발족 후 4년이 경과한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전국적으로 600개소에 가깝게 설립되어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이들 영농조합법인이 본래 취지의 농업 법인으로서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못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작금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의 협업화·법인화를 통한 경영상의 특성과 유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농산물 유통 등 생산 이외의 분야를 지향하는 경향이나, 혹은 각종 정책사업의 수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 법인경영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현재 대동 단계에 있는 농업 법인경영의 제도적·정책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농업 법인경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 법인경영의 전개 구조와 향후 전망

농업법인이란 '사업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통칭되지만, 협의의 의미로 農業生産法人만을 지칭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들 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準農家'로 규정되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 그리고 학교·종교단체·후생기관·연구기관 등의 재단법인(또는 사단법인) 등 공익적 목적의 법인만이 해당되었다.

따라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설립 근거를 마련한 영농조합법인은 현행 법률상 私法人으로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유일한 농업생산 법인이며, 이렇게 볼 때, 농작업 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는 농업생산법인이라기보다는 농업서비스사업체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 들어 농가 출자를 기반으로 한 조직체가 영농조합법인(조합형 법인)과는 다른 형태의 회사형 법인으로 다양하게 성립되는 추세이며, 이들 법인은 구성원과 자본을 확대하면서 농업 생산과 연계

된 農企業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미 양계나 양돈의 계열화는 축산경영의 새로운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2)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동향과 특징

1990년의 제도 발족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영농조합법인은 90년에 2개소, 91년 28개소, 92년 60개소, 93년 201개소, 그리고 94년 6월 까지 288개소 등으로 증가 추세이며, 따라서 현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579개소에 참여농가 17,071호에 이르고 있다.

그 설립 동향을 보면 도별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전남이 208개소로 가장 많으며, 이 중에는 해남군의 133개소와 같이 고천암 간척지의 분배를 받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의 법인도 존재한다. 작목별로는 쌀(128개소) 및 쌀과의 복합(159개소)이 주종이며, 업종별로는 생산부문(344개소)이 가장 많고, 공동출하 등의 유통만을 위한 법인도 상당수에 달한다.

평균 조합원수는 29.5명이며, 최소 3명부터 최대 1986명까지 분포하고, 유통조합인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곳도 25개소이다. 조합의 출자총액은 최소 1백만원부터 10억 5천만원까지 분포하여 평균 출자총액은 121백만원이며, 특히 농지 출자가 있는 조합은 41.6%에 불과하고 출자 규모도 적은 실정이다.

그간의 설립 특징으로 초기에는 수도작 중심의 농작업 대행 및 복합 영농을 위한 영농조합이 다수 설립되었으나, 93년부터 생산자조직 육성을 표방하는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다양하게 결성되고 이를 법인화(유통영농조합의 형태)하는 경향이 가속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유통영농조합 중에는 지역 단위의 품목별 영농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3)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실태

영농조합법인은 정책적 위상이 모호하게 출발하여 설립 동기에서부터 부실 운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영세 소농(1ha 미만 농가)의 생산공동체적인 협업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다는 취지하에 법인경영의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은 거의 없이 출발한 관계로, 특히 1993년 이전에 설립된 영농조합은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完全協業의 형태보다는 부분협업의 형태로 개별농가와와는 별개의 법인경영을 설립하였으나, 기존 농가와 독립된 경영 단위(생산공동체)로 정착되지 못하고 구성원의 노동결합 조직으로서 기존의 공동이용조직적인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조합원 스스로도 완전협업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법인경영으로서의 출자 자산 내지는 공동 자산이 영세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본래 영세농가가 농지 등 영농자산을 공동 출자하고 노동 분화를 통하여 경영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지 출자는 극히 미미하고 소유권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다. 조합의 共同資産(최소한 감가상각적립금)을 확보하는 것이 영농조합법인의 안정성·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오히려 경영 수익의 악화로 출자 배당 등의 성과 배분을 못하고 있는 조합이 대부분이다.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업경영 또는 기업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이 지적된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의 의견 조사에서도 법인경영의 잇점에 대해 나열한 것의 대부분이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법인경영 그 자체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조직 운영이나 경영관리의 수법 등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찰이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해체의 위기에 봉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4)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성과

1990~92년도에 설립된 90개 영농조합 중에서 현재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있는 조합은 45개소로 파악되며, 그 중 생산공동체인 협업경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0개소에 불과하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조합 형태로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생산조직형과 완전협업의 협업경영형, 유통조합 형태로 생산과 연계된 가공 판매형과 농산물의 수집 및 공동판매형, 기타 형태로 생산자재의 공동 생산·공동구매형과 관광농원형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생산조직형은 수탁작업의 협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향유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업농가나 위탁영농회사와의 경합으로 작업량 확보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며, 협업경영형은 대부분 생산면에서는 완전협업을 통한 규모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공사업 등 부대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공·판매형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경영은 개별적으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가공업을 통한 소득 창출을 꾀하고 있으며, 유통조직형은 일반적인 사업협동조합적 성격의 경제적 이익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통조합에서는 본래 전문적인 사업협동조합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농민조직이 담당함으로써 비전문화에 따른 경영상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기타 형태로는 지역농업 연구개발 및 영농지도를 위한 생산자조직으로서의 영농조합, 관광농원의 법인화 등이 영농조합의 새로운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2. 결론 및 정책 건의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농업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법인경영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 여부는 한국 농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며, 더욱이 60년대와는 또다른 협업농의 실험인 동시에 농기업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발전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제도 발족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영농조합법인의 정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이상에 치우친 제도가 아닌가 하는 평

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의 첫째 이유는 협업경영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협업경영은 영농자산의 공동소유를 근간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등 조합원의 출자 규모는 극히 저조하고 오히려 정책 보조사업에 의존하여 자본금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기업 형태와 관련하여, 조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 경영(組合型 法人으로 통칭함)으로서 회사형 법인과는 다른 경영적 특성을 발휘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법인 경영이라는 경영상의 특성이나 유리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업 경영에 대한 인식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이 이른바 1960년대와 같은 '협업농장'이 아닌 근대적인 경영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 농민들의 기업적 사고가 요구되지만, 이러한 기업 경영적인 사고가 거의 배양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한국 농업의 새로운 경영 형태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농조합법인 스스로가 변신을 꾀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요청된다. 경영 주체의 자력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정책 지원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영농조합법인이 자력 성장할 수 있는 근대적인 경영체가 되기 위해서는 ①경영 관리면에서 사업 선택시의 차별화·다각화 전략 및 근대적인 경영관리 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②재무 관리면에서는 복식부기 기장, 자금의 합리적인 조달과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 ③세무 관리면에서는 법인 설립시부터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세무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점으로 ④노무 관리면에서 임금(보수)의 결정, 사원 고용과 취업 규칙(근로기준법의 적용)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맞추어 영농조합법인을 둘러싼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법인 제도의 재정비

먼저 농업법인의 형태로, 조합형 법인(조합원 공동의 이익증진)과 회사형 법인(영리 목적)의 성격을 명확히 제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농업생산법인의 사업은 농업경영을 원칙으로 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연계된 부대사업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하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집·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농업생산법인 제도가 아닌 별도의 제도에 수용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법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은 농민에 한정되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의 회사형 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이 불필요하다. 다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법인의 출자자는 농지소유자이어야 하며, 비농민과 합자하여 설립하는 회사법인의 농지매입시는 최소 보유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영농조합법인 관련제도와 정책의 재정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의 협업화를 통한 규모 확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적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조합형과 유통조합형으로 구분하여 정책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성격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구역인 군단위보다는 면단위(연접 면을 포함)로 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은 체계하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가족경영의 발전적인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경영발전계획을 수립케 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선정된 조합에게는 정책자금의 용자 한도를 확대하며, 중소기업육성의 차원에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영농조합법인이 기업적 경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로 인정되어 의료보험·연금보험(국민연금)·노동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며, 법인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경영관리나 세무 관계 등에 관한 지도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1.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제도

1. 농업법인과 경영자운동의 역사적 배경

1.1. 유한회사 「新紅園」의 탄생과 법인화 운동

일본에서 ‘농업법인’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1960년대초부터이다. 법인 문제의 직접적인 계기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농업경영에 대한 자각 내지는 경영의 체질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과제에 대한 노력이 숨어 있었다.

당시 일본 경제는 고도경제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화되면서 농업경제는 정체되고, 농업과 공업 및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다. 매년 대량의 노동력이 공업 부문으로 유출되고 농공간의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농업내부에서도 겸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농업경영의 법인화 운동은 농업 여건의 악화에 따른 농업 경영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내지는 경영 자립화를 추구하기 위한 농업의 기업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농업법인 문제는 1957년에 德島縣 勝浦町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밀감의 산지로 수령 40년을 초과한 것이 많았고 수익성은 결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에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생산량도 많이 추계되어 과세액이 전년의 두배 가까이 부과되자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7년 5월, 밀감 농가의 中田長吉씨(당시 25세)가 과세 대책으로서 일반 상점과 같은 법인화를 모색하고, 세무사와

상당하여 유한회사 ‘新紅園’을 설립하였다. 가족노임을 손실 처리하고 결손을 이월하는 등 정율과세의 법인세에서 세부담 경감의 가능성을 찾아냄으로써 세제상의 이점을 알게 되었다.

그 때까지 농가로서 인식이 희박했던 ‘노임=소득’이라는 개념을 농업경영에 도입했던 中田씨의 생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뒤쳐져 있던 농가를 적어도 중소기업과 나란히 취급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中田씨의 행동에 자극되어 그 해 10월까지 이 지역 밀감 농가의 17%에 해당하는 103개 농가가 개별경영 단위로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놀란 세무당국은 법인이 농지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였다. 농림성은 德島縣의 조회에 대하여 ‘법인에 의한 농지의 취득은 농지법에 위반되므로 그와 같은 법인의 설립은 적당하지 않다’고 회답하였고, 세무당국은 농림성의 견해를 토대로 법인세의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농업법인의 문제는 여기만이 아니었다. 鳥取縣의 농업회의는 1957년 가을에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미 1952년과 56년에 모두 6개사의 법인이 설립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하여 법인 문제가 단지 세금 대책만이 아닌 농업경영의 합리화·근대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농정의 큰 과제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농업회의는 1958년 1월에 세금 대책으로서의 개별경영의 법인화만이 아닌 영세농가의 공동법인까지를 포함한 농업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동년 6월에는 「제1회 농업법인현지연구회」를 개최하여 농업 법인화가 가져오는 농지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농업의 법인화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또한 7월에는 德島와 鳥取의 두 현에 농업회의를 사무국으로 하는 농업법인화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농업법인화의 움직임은 그 후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中國과 四國의 농업회의회장 회의는 법인화 촉진을 결

의하고 농림대신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인 법인화 운동을 제안하게 되었다. 1958년 11월에는 전국농업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전국농업법인연구회가 발족되었으며, 농업법인화의 운동은 전국농업법인연구회를 축으로 국회까지 끌어들이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1959년에는 愛媛縣 吉田町 立間에서 전농가 342호가 41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등 농업법인화의 움직임은 계속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新紅園」의 中田씨와 「芳辛園」의 米田豊幸씨의 두사람이 대표가 되어, 高松 국세국장을 상대로 하여 농업법인세의 신고를 인정하도록 재판을 제기하였다. 재판은 3년후의 1962년 2월에 원고패소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유는 농지법상의 문제보다도 원고의 법인에 자본및 자산의 보유 등 회사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판결에 불만이 있었지만 당시 이미 국회에 농업법인제도의 전망이 밝았고, 또한 1961년의 세법 개정에서 백색신고의 전속종사자 공제가 인정되는 등 법인화 운동의 성과가 구체화됨에 따라 공소를 취하하였다.

1.2. 농업법인화를 둘러싼 제도의 논의

농업법인화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1958년에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취급되었다. 59년에는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가 中田씨와 米田씨 및 농업회의 관계자 등 참고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여야당 일치하에 농업법인제도의 창설과 농가의 가족노동보수를 경비로서 인정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과세상 부당하게 농업법인을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동안 관계 단체나 일부 정당은 농업법인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농업법인의 법인요강의 시안을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협업경영을 배경으로 한 생산공동조합형의 법인과, 1戶1法人의 형태로 기업적 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농업회사형 법인으로 크게 구분

하였다.

농업위원회 계통 조직은 1959년 7월에, 그 때까지 나온 법인화의 각 시안을 검토하고,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지법상의 요청에 상응하는 특수법인의 설정에 관한 단독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전국농업회의소의 견해는 각 방면에 영향을 주었다. 전국농협중앙회는 동년 8월에 '농업경영 합리화를 위한 공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농업협동조합 내부의 공동체로서의 간이법인'을 주장하고, 단독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제도화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배경으로 농림성도 농업법인에 관한 검토안을 작성하였다. 1960년 4월의 제34회 국회에 농업법인으로서 회사와 농협(농업생산공동조합) 모두를 인정하고, 또한 1戶1法人 및 數戶1法人 모두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법과 농지법의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농업법인을 허용한다는 잠정 조치로서, 근본적으로는 농림어업기본문제조사회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농림성의 개정안은 제35회 국회 및 36회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폐안되었다. 당시는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매수당한 구지주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운동이 계속되어, 지주 문제의 해결 없이는 새로운 농지정책을 단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배경이 개재되어 있다.

따라서 농림성은 1961년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농업기본법을 제38회 국회에 제출하고, 농업기본법에 기초한 농지등의 권리취득의 최고면적 제한 완화, 회사 방식과 농업생산공동조합의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농업법인의 법제화, 농지신탁 제도의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의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것도 결국 폐안되고 말았다.

농림성은 재차 검토를 한 후, 농업경영만이 아닌 기계시설의 공동이용 또는 공동작업도 하는 農事組合法人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정안을 제39회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이 계속 심의되어, 익년인 1962년의 제40회 국회에서 가결 성립되어, 동년 7월 1일에 시행되게

되었다.

이로써 농지법상 처음으로 법인에 의한 농지의 권리 취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었고, 동시에 농협법 안에 농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협업의 조장이라는 기본이념을 반영한 농사조합법인 제도가 창설되게 되었다.

2. 농업법인의 법제화 과정과 주요 논쟁점

농업법인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1962년이다. 문제가 제기된지 5년이라는 세월이 요구된 셈이다. 그러는 동안에 행정당국이나 국회측에서 여러 가지 대응이 나왔다. 이하, 법제화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1) 제1단계(1959년 법안)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5월부터이다. 농지법과 농협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법인(適法法人)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적격법인으로는 기업(회사) 형태의 법인과 조합 형태의 법인이라는 두 가지를 상정했다. 즉, 기업 형태에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주식회사를 상정하였고, 조합 형태로는 농협 및 기업조합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 단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주식회사를 '적격법인'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있다. 즉, 주식회사는 인정하지만, 전체 적격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소유권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폐안되었다.

(2) 제2단계(1961년 법안)

이어서 1961년에 두번째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여기에서의 특징점은 첫째, 제1단계에서 농협이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되었던 것을 취소하

고 그에 대신하여 새롭게 農業生産協同組合 방식을 창설한 것이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를 소위 적격법인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적격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농지의 소유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의 양도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 법인을 부인한 것이다. 결국 이 법안도 성립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농업기본법을 둘러싼 국회 혼란으로 심의되지 못함).

여기서 약간의 보충을 해두면 야당인 사회당은 당시 「농업생산조합 법안」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장래의 사회적 소유를 염두에 둔 공동화 노선의 제기였으며, 농업기본법을 둘러싸고 당시 공동화(공동경영)냐 아니면 자립경영(가족경영)이냐를 예리하게 추궁하였으나, 결국은 사회당이 이 법안을 만들었던 것이다.

(3) 제3단계(1961년 법안)

세번째의 법안은 1961년 10월에 상정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계속 심의는 되었지만, 다음 국회인 1962년 5월에야 법안이 성립됨으로써 그동안 계속되어 온 농업법인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말을 보게 된다.

여기서 앞의 회기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과 금회의 것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는, 농업생산협동조합 방식이 農事組合法人 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즉, 농업경영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법인을 인정하지만(‘2호법인’이라 함), 작업공동 이용주체인 법인도 인정(제1호법인)하며, 또한 이 두 가지를 겸하는 법인도 인정했다.

여기서 명칭 변경(농업생산협동조합 → 농사조합법인)은 지난 국회에서 성립한 농업기본법의 ‘협업의 조장’이라는 방향이 그대로 법인화된 것이며, 한마디 덧붙이면, 이 1호법인(경영주체)과 2호법인(이용주체)을 조합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책으로서 ‘협업경영’을 촉진하는 것인가 혹은 ‘협동작업을 촉진하는가 하에 대한 견해로서, 어느쪽으로 보아도 전자보다도 후자의 법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농지의 취득이 가능한 법인을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농사조합법인의 4가지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이 법인을 총칭하여 농지법상에는 ‘農業生産法人’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농업법인도 있다는 점에 주의 해야한다. 예를 들면, 농협법상의 농사조합법인에는 포함되지만, 농지법상의 농업생산법인에는 들어가지 않는 농사조합법인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회사법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앞의 제1단계에서 논의했던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빌려서 말하자면, 적격법인으로 볼 수 있는 법인의 구비 요건을 법률로 정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법조문에 격식을 차려 서술하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작농의 확대라는 틀 속에서 가족경영(=농가·농민)과는 다른 농업생산법인을 경영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3. 농업생산법인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

3. 1. 농업생산법인 제도의 변화 과정

농업생산법인 제도는 1970년에 제한 요건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이것은 전후의 농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농지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야기하였다.

즉, 농지개혁을 승계한 농지법의 自作農主義에 해당하는 요건 중에서 차입지 요건·의결권 요건·고용노동력 요건·배당 요건 등을 폐지하고, 그에 대신하여 법인의 이사 등 업무의 집행권을 가진 구성원이 1/2 이상을 점하면 되게 되었다(집행권 요건의 창설). 여기서 말하는 구성원으로는 ‘법인에 농지를 제공한 자’로서 상시 종사자를 가르키고 있으므로, 경작농민이 경영을 지배하는 범위 내일 경우에 자격 요건의 일부를 자유화한다는 개정이다.

그밖에 농협이 농업경영의 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완전히 부정되었던 농협의 농업경영주체론이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부활된 것이다.

1980년에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農用地利用増進法の 제정과 병행한 농지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의한 농업생산법인의 자격으로, 앞에서 말한 이사 등 집행권을 가진 대부분의 자격을 상시종사자만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농지 제공자의 삭제). 이것은 소유와 이용을 철저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결국 노동과 경영의 일치(=경작농민의 경영 지배권 부여)만 남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논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세번째의 개정은 1988년의 농용지이용증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직접 법인의 요건을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구성원이 그 법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등의 목적에 한하여 농지의 권리 취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수되어 온 농지제도상의 자작농주의 이념은 최종적으로 부정된 셈이다. 즉, 경작을 위해서가 아닌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농업생산법인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인 ‘농업’ 이라는 업무요건과 구성원의 자격 요건인 ‘농지의 제공자’나 ‘상시 종사자’의 요건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결국, 농업생산법인이 인적 결합체이며 자본 결합체가 아니라는 정신은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3.2. 농업생산법인을 둘러싼 최근의 견해

농업생산법인의 법제화가 시도된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농업생산법인을 둘러싼 논의는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가운데 농업생산법인의 위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제기가 거론되고 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성의 의견

농업생산법인을 둘러싼 구체적인 법 개정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으나,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1人1法人'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농업의 기업화 및 농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배양한다는 관점에서 농업 분야에도 주식회사 형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적용 문제는 결국 농지의 취득 권리와 관련하여 자본 결합체에 의한 농지의 지배 문제가 가장 큰 논쟁점이며, 단순히 경영형태론만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2) 연구자 및 학자의 견해

농업구조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소농체제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법인 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농업의 협동화(=공동화)에 의하여 소농체제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노선은 유한회사를 비롯한 어떠한 회사 형태의 농업법인을 부정한다는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협동화와 관련하여 농민 개인의 인격적인 자립 문제를 논의의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장래에는 사적소유제 하에서 협동조합적 토지보유를 꾀하고(협동농장), 생산과 경영주체의 정립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파트너쉽과 같은 농민경영(종래형의 가족경영이 아닌 것에 주의)을 기초로 하여 협동작업 단계 또는 경영주체에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조직체로서의 준협동경영 단계의 주체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협업경영(체) 단계까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둘째는 위와는 정반대로, 소위 규제완화 노선으로서, 생산 및 경영에 관하여 모든 법적인 틀을 벗어난 자유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개별농가의 경영외부 의존이 진전될수록 법인화가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여기에는 농가의 양극분해형 구조재편론을 억누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은 가족 소유(보유)·개체의 확립과 경영의 자립·가족협동노작적 소농경영을 개혁하려는 점에서는 거의 같은 노선에 있으며, 현행의 농지법적 농지제도의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3)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의 의견

농지법상의 농업생산법인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농업법인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公益法人(사단 또는 재단)이다. 이는 농지의 권리 취득은 할 수 없지만, 작업수탁은 가능하다는 점이 특색이다.

구조정책적으로 이러한 공익법인이 주목되는 것은, 첫째로, 농업생산법인 정책이 농지제도와 정합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예상 이상의 빠른 속도로 진척되면서,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이러한 공익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농가의 분해가 전계층에서 하강하는 가운데, 공익법인이 가족경영에 대신하는 새로운 경영체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오퍼레이터로 농민(신규 참여를 포함)을 조직화함으로써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를 창출하고자하는 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번째로는, 공익법인 성립의 의의가 지역의 농지보전이라는 소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4) 농민의 의견

농민의 의견은 특히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된 두 가지 점만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는, 개별경영의 경영 개선을 위한 방향의 일환으로서 회사 형태(특히 유한회사)의 법인이 농민들 가운데 중시되고 있는 점이다. 개별자작농의 단순한 집합체로서의 회사(경지규모 확대의 수단으로서의 법인화)만이 아닌 자본규모의 확대와 경영·기획·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회사법인의 설립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농민 스스로가 농업생산법인을 기업체적 성격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농업생산법인이 아닌, 즉, 농지의 권리 취득과는 관계 없는 농업법인화에 관한 동향이다. 그 중 하나는 농산물 가공·유통·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경영체를 농민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주식회사에서는 도시의 시민을 주주로 수용하여(농산법인에는 주주가 허용되지 않으며, 출자좌수 제한도 도입), 이들과 농민이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하는 새로운 경영체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에서는 농민과 시민이 연대하여 도시·산촌간의 교류 및 관광농원 운영 등과 같이 농업을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4. 농업 법인경영의 제도적·정책적 지위

4.1. 개인경영과 법인경영의 차이

(1) 농지 취득

개인경영의 농지 취득은 완전 경작, 상시 종사, 효율적 이용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반면에, 농업생산법인에 대해서는 완전 경작, 효율적 이용 및 개인의 상시종사 요건에 대신하여 사업 요건, 구성원 요건, 업무집행 임원의 요건 등이 주어진다.

(2) 세제상의 차이

개인경영의 경우 소득세는 개인 사업주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상근 종사자(급여 수령자)는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과되며, 사업세는 농업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유한회사는 보통 법인의 경우 37.5%이지만,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유한회사로서 연간 소득이 800만엔 이하일 경우에는 28%를 적용하며, 이때에 임원의 보수 및 종업원 급여는 손실 계정에 산입한다. 그리고 농사조합법인으로서 配當型 組合은 27%, 給與 支拂型 組合은 출자금 1억 이하의 농사조합법인으로서 연간 소득이 1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하여 28%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는 유한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과 농사조합의 급여 수령자는 보수 및 급여에 대하여 과세되며, 농사조합법인의 배당액 수령자는 사업소득과세를 하고 있다.

사업세에 대해서 유한회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농사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농사조합법인의 농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의 과세 조건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2,000만엔을 초과한 조합에는 법인의 경우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3) 상속

개인경영의 경우는 첫째, 경영주의 사망에 따라 농지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경영은 계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 민법의 균분상속제 하에서 농지의 세분화가 일어난다. 셋째로, 相續稅 納稅猶豫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반면에 법인경영의 경우는 첫째, 법인에는 상속이 없으며, 둘째로, 구성원에 대하여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경영은 계속된다. 셋째로, 구성원이 소유하는 지분의 상속에 의한 세분화는 경영에 영향이 없다. 넷째로,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농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납세유예 제도는 제외된다.

(4) 금융

농지 등 취득자금의 대출 한도액에 대해서는 먼저 개인경영의 경우, 일반대출일 경우에 4백만엔, 농지보유합리화 등에 의한 취득은 12백만엔, 농가의 취득에는 50백만엔 등이다. 그러나 법인경영의 경우에는

각각 16백만엔, 48백만엔, 150백만엔 등으로 대출한도가 높다.

또한 경영체육성 특별융자 제도에 의한 대부 한도액도 개인경영은 1억 5천만엔인데 대하여, 법인경영의 경우에는 5억엔이다.

(5) 연금

개인경영의 경우에 사업주는 農業者年金の 대상이고, 피고용자는 후계자에게만 농업자연금(임의가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한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은 사업주나 피고용자를 막론하고 각각 후생연금과 농림어업 단체직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6) 보험

의료보험은 개인경영의 경우에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농업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반수 이상의 동의 및 지사의 인가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법인경영의 경우 건강보험은 사업에 관계없이 가입 의무를 지니며,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동재해보험은 개인경영에 대해서는 노동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보험과 노동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경영의 경우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4.2.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유한회사)의 차이

(1) 조직상의 차이

첫째, 사업내용에서 농사조합법인은 농업에 관계되는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농작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농업경영(함께하는 임업경영) 및 부대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며, 유한회사는 농업생산법인의 사업요건에 부합되는 영리사업의 일반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구성원의 자격 및 수에 대해서 농사조합법인은 3인 이상의 농

민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한회사는 구성원의 숫자가 50인 이하이며(재판소의 허가에 의하여 예외도 있음),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농민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의결권에 대해서는 농사조합법인이 1인1표제인데 대하여, 유한회사는 1구좌1표제이다.

넷째, 임원의 자격으로서, 농사조합법인의 경우에 이사는 그 법인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반면에, 유한회사는 대표이사를 사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임할 수 있다.

다섯째, 고용 노동력에 대한 규정으로, 농사조합법인은 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조합원 및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 이외의 수가 상시 종사자 총수의 2/3 이하로 제한되는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여섯째, 자본금은 농사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유한회사는 300만엔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세제상의 차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농사조합법인이 종사분량 배당형 법인의 경우에 세율은 27%이며, 종사분량 배당에 따른 비용을 산입한 후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급여 지불형 법인은 보통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보통법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율은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할 경우에 37.5%,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 800만엔 이하가 28%, 800만엔 초과일 때에는 37.5%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세에 대해서는 농사조합법인에게는 농업이 비과세가 되며, 유한회사는 보통법인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세율은 연간 소득 350만엔 이하인 경우에 6%, 연간 소득 350~700만엔인 경우에 9%, 그리고 7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농사조합법인은 농협법에 기초하여 등기는

하되 비과세로 하고 있으며, 유한회사는 보통법인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은 5%이고 임차권의 설정 이전은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5. 농업생산법인의 설립 동향

먼저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설립 동향을 정리하면 <부표 1>과 같으며, 농업생산법인의 수는 1962년 법제화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 현재 법인의 수는 3,748개로서 1965년의 1,294개에 비하여 약 2.9배가 증가했다. 시기별로 보면 제도화 초기인 1960년대에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정체 상태이다가, 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회복하고 있다.

법인형태별로는 유한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1년 현재 유한회사 형태가 58.3%, 농사조합법인 형태가 41.1%로서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주요 업종별 추이를 보면 미맥작과 과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축산은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 현재의 점유 비율을 보면 축산이 40.5%로서 가장 많으며, 미맥과 과수가 각각 16.1%와 15.2%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종별 법인형태별 생산법인의 수를 보면, 미맥·축산·특작은 유한회사가 지배적인 형태인 반면에, 채소와 양잠 부문에서는 농사조합법인이 많다.

부표 1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설립 동향

단위 : 개소

연 도	합 계	조 직 형 태 별				업 종 별				
		농사 조합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	미맥	과수	축산	채소	기타
1971	3,069	1,308	1,739	19	3	799	931	976	41	322
1975	2,870	856	2,007	13	3	788	845	852	71	323
1980	3,179	1,157	2,001	18	3	743	700	1,103	103	530
1985	3,168	1,324	1,825	14	5	553	516	1,262	157	680
1991	3,748	1,541	2,184	16	7	599	567	1,508	233	841

부표 2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업종별·형태별 분포(1991년)

단위 : 개소

구 분	미 맥	과 수	축 산	채 소	특 작	양 잡	기 타	계
농사조합	235	277	538	150	114	44	183	1,541
유한회사	359	288	964	82	141	3	347	2,184
합자회사	3	1	4	1	2	-	5	16
합명회사	2	1	2	-	-	1	1	7
계	599	567	1,508	233	257	48	536	3,748

주 : 업종 구분은 주된 부문의 조수익이 50% 이상인 형태이며, 모두 50% 미만일 경우는 '기타'로 구분함.

한편 법인 유형별로 참여 세대수를 보면, 1991년 현재의 전체 참여 세대 21,686호 가운데 농사조합법인이 16,219호로서 74.8%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형태로는 유한회사가 25.0%,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가 0.2%를 점하고 있다.

법인의 구성 세대수별 분포를 보면 농사조합법인은 3~5호로 구성된 경우가 690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6~10호가 385개의 순이다. 또한 21호 이상의 다수 집단도 155개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은 10.5

호이다.

반면 유한회사는 1호 단독가구로 구성된 경우가 1,083호(49.6%)로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며, 평균 구성 세대수도 2.5인으로 농사조합법인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법인경영에 종사하는 사원(조합원) 수의 분포를 보면, 농사조합법인이 평균 13인이고, 유한회사는 평균 4인이다. 또한 참여 세대의 세대당 사원(조합원) 수는 농사조합법인의 경우에 호당 1.24명, 그리고 유한회사는 1.6명이며, 특히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세대당 2인 이상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부표 3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구성원 분포(1991년)

단위 : 개소, 호

구 분	1호	2호	3-5호	6-10호	11-20호	21호이상	계	세대수
농사조합	39	118	690	385	154	155	1,541	16,219
유한회사	1,083	407	539	121	29	5	2,184	5,412
합자회사	6	5	5	-	-	-	16	38
합명회사	3	1	2	1	-	-	7	17
계	1,131	531	1,236	507	183	160	3,748	21,686

부표 4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사원수(조합원) 분포(1991년)

단위 : 개소, 인

구 분	1-2인	3-4	5-10	11-20	21-30	31-50	51인-	계	인원수
농사조합	-	-	1,160	215	60	46	60	1,541	20,031
유한회사	438	1,180	502	54	3	4	3	2,184	8,917
합자회사	3	9	4	-	-	-	-	16	63
합명회사	-	6	1	-	-	-	-	7	26
계	441	1,195	1,667	269	63	50	63	3,748	29,037

부표 5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의 형태별 고용자수 및 자본금(1991년)

구 분	조사대상	구성원수	상근고용자	임시고용자	자본금총액
농사조합	35개소	12.7명	1.2명	3.9명	20백만원
유한회사	37	4.2	2.8	13.8	6
합 계	72	8.3	2.1	9.0	13

자료 : 조사대상 72개법인은 각현의 임의추출에 의하였음.

또한 법인경영의 고용자 수는 농사조합법인의 경우에 상근고용자가 1.2인이고 임시고용이 3.9인인 반면에 유한회사는 상근고용이 2.8인이고 임시고용이 13.8인으로서, 유한회사가 농사조합법인보다 고용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자본금에서는 농사조합법인이 2천만엔이고 유한회사가 6백만엔으로서, 구성원이 많은 농사조합법인이 영농조합에 비하여 많은 자본금을 가지는 경향이다.

끝으로 농업생산법인의 동향과 관련하여 현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농업생산법인이 주로 겸업종사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농업노동 일수가 적으므로 전업적인 기계 운전자가 육성되지 못하고, 또한 경영관리 노동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가 낮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 결과, 법인경영의 관리자(리더)에게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리더의 확보가 곤란하여 법인의 계속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로, 농업생산법인이 주로 전업농가로 구성된 경우에는 법인 구성원과 고용자의 연간 취업을 위하여 경영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사업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수도작 경영의 경우에 지역적으로 분산된 농지를 임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영규모 확대의 유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인이 많으며, 일부 법인은 미곡 집하·가공·판매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용 노동력의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생산법인이라는 구성원 요건의 제약을 받고 있다.

셋째로, 대부분의 법인경영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산법인과는 다른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분사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공·유통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추세이다.

이들 자회사에는 지역 특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역 상공회 구성원의 출자 형태,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자의 출자 형태, 나아가서 음식점 혹은 레스토랑 경영 등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부록 2. 농업 법인경영의 실태에 관한 조사표

1. 영농조합 명칭 : _____
2. 설립일자 : _____
3. 조합원 및 사원의 현황을 적어 주십시오.

	설립당시	현재
조합원(출자자) 수	명	명
상근종사자 수	명	명
- 그 중 조합원	명	명
- 그 중 비조합원	명	명
※ 경리사무직원	명	명
연간 일용인부 고용	명	명

4. 출자금 및 보유자산의 현황을 적어 주십시오.

	설립당시	현재
총출자금액	만원	만원
- 그 중 현금 출자	만원	만원
- 그 중 현물 출자	만원	만원
소유농지 면적	평	평
- 그 중 논면적	평	평
- 그 중 밭면적	평	평
- 기타 토지면적	평	평
주요건물, 시설면적		
- 사무실	평	평
- ()	평	평
- ()	평	평
- ()	평	평
- ()	평	평

5. 차입금 등의 부채 상황을 적어 주십시오.

	설 립 당 시	현 재
은행융자, 사채 등	만원	만원
정부지원 융자금	만원	만원

6.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해당란에 모두 표 하십시오)

- () ①농수산업의 경영
- () ②집단체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 ③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 ④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
- () ⑤농작업의 대행
- () ⑥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 () ⑦위탁판매 등 유통사업

7. 농업경영의 연간 매출액(93년 1년간)을 적어 주십시오.

벼 농 사	만원	한 우	만원
노지채소	만원	낙 농	만원
시설원예	만원	양 계	만원
과 수	만원	양 돈	만원
		합 계	만원

8. 부대사업의 연간 수입액(93년 1년간)을 적어 주십시오.

임작업료	만원	가공, 판매	만원
토지임대	만원	위 탁 판 매	만원
시설임대	만원	부 업 단 지	만원
기계임대	만원	()	만원
		합 계	만원

13. 귀 영농조합은 어떠한 성격이 강한 조직입니까?
 ①친인척 관계가 중심인 혈연조직
 ②지역 단위로 맺어진 지연조직
 ③사업을 위해 결합된 기능조직
 ④()
14. 귀 영농조합은 조합원 농가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①개별농가가 합친 생산공동체적인 협업경영이다.
 ②조합원의 농사와는 별개로 창설한 협업경영이다.
 ③농업경영보다는 농산물의 가공, 판매를 위한 조직이다.
 ④필요한 공동작업을 하는 정도의 생산조직이다.
 ⑤()
15.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얻게 된 가장 큰 이익은 무엇입니까?
 ①생산규모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
 ②부대사업을 통한 농외소득 획득
 ③공동작업을 통한 여유있는 농업 실현
 ④시장, 금융기관 등의 대외적인 신용력 확보
 ⑤()
16. 영농조합의 운영 방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①조합원 전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각부서(작업반)의 책임분담체에 의한다.
 ③①과②를 병행한다.
 ④조합장(대표)이 주도한다.
 ⑤()
17. 위와 같은 현재의 운영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①현상태로 좋다.
 ②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③()

18. 현재의 운영 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①조합원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 () ②역할 분담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 () ③신속하게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다.
 - () ④명령 계통이 철저하지 않다.
 - () ⑤()
19. 조합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과 개인은 어떠한 관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조직이 우선되어야 한다.
 - () ②개인의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
 - () ③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 () ④()
20. 조합장 또는 부서 책임자의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해야 할 목표만 제시할 정도이다.
 - () ②목표 제시는 강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 () ③아주 강한 명령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 () ④()
21. 조합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 () ①대화를 통한 호선
 - () ②투표로 선출
 - () ③순번제
 - () ④()
22. 상근하는 조합원의 보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 () ①월급제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 () ②작업일당제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 ③()

23. 상근 조합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설 립 당 시	현 재
조합장(대표자)	만원	만원
임원급 조합원	만원	만원
일 반 조합원	만원	만원

24. 조합원에게 출자액에 따른 성과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 () ①모든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 ②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 ③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 ④()

25. 경리장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 () ①복식부기로 정확하게 기장한다.
 () ②경리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장한다.
 () ③()

26. 설립 이후에 조합이 해산될 위기가 있었습니까?

- () ①있었다.
 () ②없었다.
 () ③()

27. 그러한 해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조합원의 불화
 () ②경영의 수익성 저하
 () ③운영자금 등의 자본 취약
 () ④수익 배분 문제
 () ⑤()

28. 귀 조합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자 합니까?

- () ①현재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 () ②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 () ③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 ④()

29. 귀 조합의 발전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무엇입니까?

- () ①농지 부족
- () ②자금 부족
- () ③노동력 부족
- () ④경영관리 능력의 취약
- () ⑤()

30.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두 가지만 골라 ○표 하십시오.

- () ①조합원의 화목 유지
- () ②책임과 역할 분담
- () ③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개선
- () ④자금 조달과 원활한 운용
- () ⑤농업의 경영규모 확대
- () ⑥부대사업 등의 확충
- () ⑦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당
- () ⑧인근농가에 대한 서비스

31. 귀 조합이 소재한 지역의 농업 여건을 적어 주십시오.

{	논의 거래가격 : _____ 만원/평당
	논의 임 차 료 : _____ 만원/마지기당
	※ 논 1마지기는 _____ 평
	논의 쌀 수확량 : _____ 가마/마지기당, 정곡

32. 끝으로 영농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이 나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참 고 문 헌

- 강정일 외, 「농업기계화 사업의 장기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 구재서, “농업구조개선 시범사업으로서의 개척농장 육성에 관한 약간의 제안”, 「농촌경제」 5집, 1963.
- 김병대, 「한국농업경제론」, 비봉출판사, 1982.
- 김정호 외,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김정호 외,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김준보, “기업농과 협업농의 생산성 평가: 농업구조 개선에 붙임,” 「농업경제연구」, 1962.
- 문팔용, 「농업기계화의 정책과제: 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1980.
- 유인호, 「한국농업협업화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원, 1972.
- 유종완 외, “농업생산조직의 유형과 농업구조문제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1991.
- 윤수종, “한국 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0.
- 정영일, “농업구조 문제에 관한 하나의 시각: 가족경영하의 농업생산조직의 형성과 전개,” 「산업경제의 이론과 분석」, 비봉출판사, 1983.
- 조영탁, “농업문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경제평론」 2, 한국사회경제학회편, 한울, 1990.
- 주종환, 「농업기계와 영농조직」, 일조각, 1981.

- 주종환 외, “일본의 영농집단(농업생산조직)의 형성과 전개과정,” 「농업정책연구」, 1991.
- 허신행, 「지역농업과 복합영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 농림수산부,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령」, 1991.
- 농수축산신문사, 「작목반의 현장」, 1993.
-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4.
- 高橋正郎, 「日本農業の組織論的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3.
- 小倉武一(編著), 「集團營農の展開」, 御茶の水書房, 1976.
- 吉田博, 「農業生産共同組織論」, 農林統計協會, 1980.
- 吉田忠編著, 「地域農業と農業經營」, 明文書房, 1980.
- 大原興太郎, 「稻作受託組織と農業經營」, 日本經濟評論社, 1985.
- 高橋信正, 「現代農業生産組織の展開論」, 明文書房, 1986.
- 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農業生産組織の新たな展開方向」, 1988.
- 伊藤忠雄, 「現代農業生産組織の經營論」, 農林統計協會, 1991.
- 稻本志良, 「地域農業·農業經營と法人經營」, 京都府農業會議, 1992.
- 全國農業會議所, 「農業法人の經營實務」, 1992.
- 全國農業會議所, 「農業法人への挑戰」, 1993.
- 富民協會·每日新聞社, 「農業と經濟」(農業生産法人 特輯), 1993. 6.

연구보고 R301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

농업법인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접근

적은날 1994. 12. 펴낸날 1994.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적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